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의 무역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
연구

-무역계약조건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이 상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의 무역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
연구

-무역계약조건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윤 광 운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이 상

이상(李炤)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승인)함.



주	심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위	원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윤 광 운	(인)

목 차

ABSTRACT	-----IV
----------	---------

제 I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

제 II 장 중국의 무역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선행연구	-----3
제2절 중국 무역분쟁의 현황	-----10
1. 중국의 무역 현황	-----10
2. 중국의 무역분쟁 현황	-----11
제3절 중국의 무역분쟁해결제도	-----15
1.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15
2. 중국 분쟁해결기관의 발전과정	-----17
3. 중국 중재의 수립과 집행 과정	-----23
4.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26
5. CIETAC 2012 중재규칙의 특징	-----27

제 III 장 중국의 무역계약조건별 분쟁사례분석

제1절 계약조건별 분쟁사례분석	-----32
1. 품질조건 사례	-----32

2. 포장조건 사례 -----	36
3. 운송조건 사례 -----	38
4. 보험조건 사례 -----	40
5. 중재조건 사례 -----	41
6. 가격조건 사례 -----	43
제2절 중국의 무역분쟁사례의 문제점과 시사점 -----	50

제 IV 장 중국의 무역분쟁 해결방안

제1절 중국의 무역계약조건별 분쟁해결방안 -----	59
제2절 중국의 무역중재제도의 문제점 -----	64
제3절 중국의 무역중재제도의 개선방안-----	66

제 V 장 결론 -----	71
----------------	----

참고문헌 -----	7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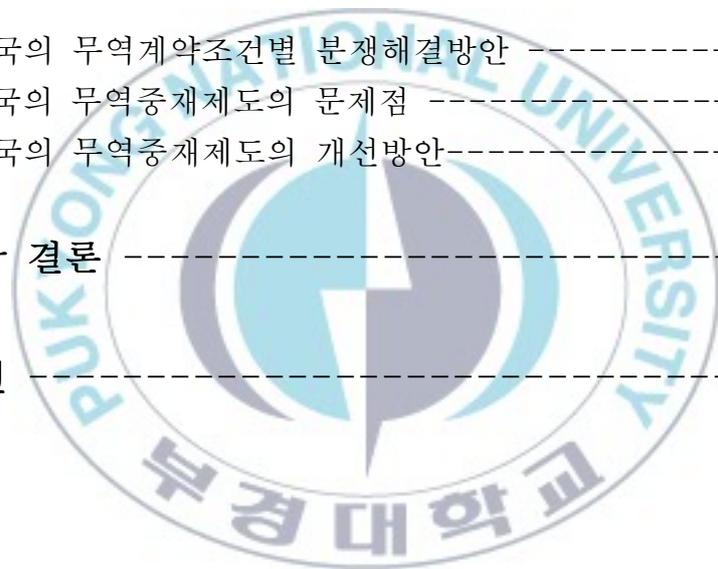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2-1> 한국의 선행연구 요약 -----	5
<표 2-2> 중국의 선행연구 요약 -----	8
<표 2-3> 중국 수출입 통계 -----	10
<표 2-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분쟁처리 현황 -----	22
<표 2-5>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섭외사건 분쟁처리현황 -----	22
<표 3-1> 사례분석 요약 -----	46
<그림 2-1> 중국의 중재기구 관련 조직도 -----	18
<그림 2-2> CIETAC의 기구설치 및 구성원 -----	20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 Trade Claim and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Focusing on the Cases Related to the Terms of Trade Contracts-

Li Sh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relations among all countries and regions are getting closer increasingly. The economic relationship and means of communication among countries are changing as the society develops dimensionally. In the process of different ways of economic exchange, new problems and disputes emerge gradually and the ways to solve these dispute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In order to deal with the increasing disputes efficiently, every country is improving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so as to establish an excellent order and system under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Meanwhile, arbitration is playing a very essential role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 its several features including flexibility, economic feasibility, high efficiency and confidentiality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paper, the first chapter expounded the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and explained clearly th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In the second chapter,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system, the form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current settlement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China were mainly introduc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as revealed in details. In the third chapter, as for the case analysis, the writer classified the forms of arbitration in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through the actual case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ccording to different reasons including quality, package, price and contract conclusion. In the fourth chapter, in terms of the forms of arbitration in China, according to the previous case study, countermeasur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existing problems we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par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were summarized.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세계화의 영향으로 각 국, 각 지역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 관계 및 교류 방식도 사회발전과 함께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제 교류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와 분쟁이 두드러지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건전한 질서 및 체계가 확립되도록 기존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끊임 없이 개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재는 유연성, 경제성, 고효율성 및 당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성 등 다양한 특징으로 국제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과거의 관례를 근거로 법적판정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 실제 영·미를 비롯한 관례법 국가에서 국제 및 국내 상사중재 판결은 당사자가 의사자치 권리를 행사하고 중재재판소에 관할, 재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私)적’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재정은 역시 보편적 지도의미가 있는 ‘공(公)적’ 관례법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다.

2013년 3월 국무원법무팀정부법무협조사(國務院法制辦政府法制協調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중재기관 219곳에서 지난 2011년보다 9% 증가, 총 96,37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중 1,161건은 외국 관련 사건이었다(중국 국제무역경제중재위원회 미포함). 같은 해, 전국에서 국내 법원이 판정한 취소 또는 불집행 중재판결은 215건, 전체사건에서 0.24%를 차지했다.¹⁾

거대한 사건금액과 급속한 비중 증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재기관의 중요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중시하고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기존의 국제무역 중재규칙을 깊이

1) 宋連斌, 彭麗明, "2013年中國商事仲裁年度觀察", 「北京仲裁」, 제83권 제1호, 2013

연구하고 사례를 접목해 더 효율적인 무역분쟁해결 및 발생 가능한 무역분쟁예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인터넷 자원, 그 외 각종 자료와 한국중재법, 중국 중재법 및 판정사례 등을 참고하는 문헌적 연구 방식에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자료로서 무역 관련 각종 학술단체의 학회지 및 발표논문집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참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재제도 원문을 번역하여 분석하였고, 중국 일간지, 시사 잡지, 홈페이지를 통한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재사례 분석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논술하고 연구 방법 및 내용을 밝힐 것이다. 제2장 무역 분쟁 현황 및 해결제도에서는 최근 중국의 국제무역형식 및 국제무역분쟁대응에 관한 기존 해결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중국 국제무역분쟁 해결기관의 발전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할 것이다. 제3장 사례분석에서는 품질, 포장, 가격, 계약체결 등 원인별 중국 국제무역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방식의 종류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 분쟁해결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사례를 근거하여 중국기존의 중재방식 현안, 대응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와 마지막 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할 것이다.

제 II 장 중국의 무역분쟁현황 및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선행연구

1. 한국문헌연구

신군재²⁾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조정 제도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신군재는 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송과 중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재절차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중재제도의 한계점으로 보았고, 실무적으로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거래를 생각할 경우에는 사업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재의 한계점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국과 거래 시 분쟁 발생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중재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우광명³⁾은 중국의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도출하고, 중국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광명은 중국의 섭외 분쟁 발생 시, 재판 외 분쟁 해결제도(ADR)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당사자에게 융통성과 다양한 선택하여 절차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한

2)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 14 권 제 1 호, 한국중재학회, 2004, pp. 157~184 참조.

3) 우광명, "중국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인민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 21 권 제 1 호, 국제상학회, 2006, pp.113~131 참조.

이유로 국제무역 분쟁에서 소송이 아닌 ADR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ADR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ADR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중국에서 ADR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인민 조정 제도와 중재제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인민 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제도와 비교 분석해보면, 인민 조정 제도는 국제 상사분쟁 해결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제도와 비교선상에 놓일 수 없다고 본다. 논문에서 밝힌 연구목적은 중국의 분쟁 해결제도를 숙지하여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인민 조정 제도를 분석한 부분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주원(2005)⁴⁾은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에서 중국의 중재법과,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중재 기관인 CIETAC⁵⁾의 중재규칙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 하였다. 즉, 중국의 중재법 규칙들이 시사한 유의점을 도출하여 중국기업과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무역실무자들에게 중재제도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이주원은 중국의 분쟁 해결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조정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특히 중국 중재법은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어 외국과 관련된 중재판정 취소 및 강제집행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심리 시에 중재인이 판단을 놓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쟁점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주원(2004)⁶⁾은 중국의 대표 중재기관인 CIETAC의 최근 실제 판정

4)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 15 권, 제 3 호, 한국중재학회, 2005, pp.113~137 참조.

5) CIETAC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의 약어이며, 1954년 한국의 대한상사공회의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 CCOIC)라고도 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CCPIT)산하에 설치되었던 대외 무역중재위원회의 전신으로 198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된 것이다.

6) 이 주원, "CITER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19 권, 제 2 호, 국제상학회, 2004, pp.185~201 참조.

사례를 검토해보고 중국의 중재절차사의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즉,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중국기업과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주원의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의 실제 중재판정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기존의 중국의 중재법 체제의 문제점만을 언급했던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주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중국의 중재 규칙상에서의 석명적인 요구에 대한 언급과, 중국에서 중복 중재판정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무역실무자들에게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로 평가된다.

오원석·이경화⁷⁾는 중국 중재기관에서 수리하는 상당 부분의 안건이 중재절차 과정 중에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조정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에서 195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모든 중재기관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에서도 이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연구는 중국 무역을 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여, "중재와 조정의 결합"방식을 사용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중국에서 이 방식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국 "중재와 조정의 결합"방식에 대한 다른 국가의 수용 가능성과 효용성의 연구 내용이 제기된 사실은 이 연구의 문제점이다.

<표 1-1> 한국의 선행연구 요약

주제별	연구자	논문 제목	연도	연구의 중점	문제점
중국의 무역 분쟁	신군재	무역 분쟁해결을 위한 중·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2004	중국의 중재제도의 한계점을 제기	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 결국 중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7) 오원석, 이경화, "중국의'중재와 조정의 결합'제도 와 시사점", 「貿易學會誌」 제 38 권 제 4 호 2013, pp.93~115 참조.

사 례 에 관 한 연 구	우광명	중국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중국의 ADR제도 문제점을 제시.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인민조정제도는 논문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음.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4	CIETAC의 최근 판정사례 분석 중국의 중재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2005	CIETAC의 중재규칙의 특징을 분석. 중국의 중재법규칙들이 시사한 유의사항을 도출.	중재규칙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오원석 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와 시사점	2013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례로 통하여 제도 효과 제출 함.	다른 국가에서 이 제도가 수용가능성 과 효용성이 대한 내용이 미흡함.

2. 중국문헌연구

馬駿⁸⁾는 경제의 글로벌화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기존중재제도가 국한되어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입법경험에 비추어 중재협회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고정된 해석을 진행하였다. 중재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시중재기구에 상응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법원은 중재기구에 대한 간섭을 점차 약화시키고 중재기구에 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재는 ADR 방식의 일종으로서 융통성, 민첩성, 화해성에 대한 추구는 모두 절차 주체성의 이론 지도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현행 중재제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 주체성이론이 당사자 해결과정에 충분히 체현되

8) 馬駿, "我國商事仲裁制度改革若干建議", 『行政與法』第12期 2011, pp. 76.

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민간 모순 해결방식으로서의 특유의 우위를 충분히 체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중재기구에 대해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가 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핵심이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전통적인 중재방식 즉 쌍방이 서로대항하고 소송과 비슷한 모식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피면하며 법적으로 당사자의 자유공간을 넓혀줘야 한다.

심사보(沈四宝)⁹⁾등은 중국의 중재사업이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계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외국의 경험 및 국제관례와의 관계; 둘째, 본국의 전통적 해결방법과의 관계; 셋째, 사법기구, 행정부문과의 관계 4. 여러 중재기구사와의 합작 및 경쟁관계. 즉 중국 중재사업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문제와 중국국정에 의한 현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중국 상업 모순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국제적 선두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는 관건적인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제도가 아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중재기구와 중재재판소의 직권이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중재를 하는 원칙을 충분히 체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재에 대한 사법기구의 감독제도가 불합리하고 섭외 중재 및 국내 중재가 이원화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张博华¹⁰⁾의 연구에서는 중재협의를 효력에 대하여 张博华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중재협이는 중재제도의 기반으로서 중재협의를 효력은 직접적으로 중재 절차의 운행에 영향을 준다. 중국의 <중재법>이 규정한 중재협 의 효력확인 제도는 중재협 의형식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엄격한 문제점이 있다. 중재 협의형식에 대한 요구를 적당히 낮추고 중재협 의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 각 나라의 중재법이나 국제조례들은 중재협 의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서면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의의는 중재협 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때문에 중재협 의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은 서면 형식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온라인 중재협 의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중재협 의는 서면 형식의

9) 沈四宝, 沈健, "中国商事仲裁的特征与自主创新", 『法学』第12期 2010, pp. 34.

10) 张博华, "我国仲裁协议效力确认制度的问题与完善", 『山西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第3期 2011, pp. 110.

중재협의처럼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등소뢰(邓晓蕾)¹¹⁾는 중재는 소송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적고 비교적 높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띄며 당사자의 의사자치(意思自治)¹²⁾를 충분히 체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재의 부단한 발전과 더불어 중재는 점차 소송화 되어 있다. 그 표현으로는 중재절차가 점차 소송절차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소송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중의 하나인 중재는 본연의 의미와 우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중재와 소송은 두 가지 부동한 분쟁 해결방법이다. 중재와 소송은 각자의 특징이 있다. 중재를 함에 있어서 소송의 유관규정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중재의 독립성은 의의를 잃게 되며 따라서 중재는 점차 도태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재의 소송화는 중재절차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재의 소송화는 중재가 고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중재의 존재자체에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다.

〈표 1-2〉 중국의 선행연구 요약

주제별	연구자	논문 제목	연도	연구의 중점	문제점
중국의 무역분쟁사태에 관한 연구	黄亚英	论商事仲裁的十大特点和优势	2013	중국의 중재제도의 분쟁해결에 대한 특성과 우세 제기	다음국가 중재제도의 비교가 부족함.
	马骏	我国商事仲裁制度改革若干建议	2011	중국에 실행하는 중재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기	중국 중재법과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지만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

11) 邓晓蕾, "论仲裁制度的诉讼化", 『甘肃广播电视大学学报』第2期, pp. 53~55.

12) 의사자치,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법관계를 그 의사에 의하며 자유로 규율하게 하는 것, 즉 사적자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뜻하는 바 국제사법에서 특히 이 말이 쓰인다. 국제사법에서 의사자치라 함은 법률을 지정한 경우에 그 지정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그 자체를 지배하는 법률의 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준거법을 정하는 대신에 어느 한 곳의 법률에 의하고자 하는 지정이다. 전자를 저촉법적지정(低觸法的指定) (Kollisionsrechtliche Verweisung)이라고 하고, 후자를 실질적 지정(Materiwillrechtliche)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자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沈四宝 沈健	中国商事仲裁制度的特征与自主创新	2010	중국의 중재환경과 중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제기	개선방안의 유용성과 수용가능성 대한 내용이 미흡함.
	张博华	我国仲裁协议效力确认制度的问题与完善	2011	중재판결 받은 후 당사자 간에 중재결과에 대한 집행상황 제기	구체적인 사례분석 대한 내용이 미흡함.
	邓晓蕾	论仲裁制度的诉讼化	2011	중국의 중재제도가 소송 쪽으로 변하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기	중재 소송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제2절 중국 무역분쟁의 현황

1. 중국의 무역현황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관리 제도 및 정책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 흑자 규모도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국 역시 주변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대외무역관리 체제개혁의 중점을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융합발전, 그리고 주요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무역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 약속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리제도와 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무역관리의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산업과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는 이전의 관리체제와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표 2-1〉 중국 수출입 통계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금액
1998	1,805		1,403		401
1999	1,951	8.1	1,657	18.1	293
2000	2,492	27.1	2,250	35.8	241
2001	2,666	7	2,435	8.2	230

2002	3,256	22.1	2,953	21.2	303
2003	4,384	34.6	4,130	39.9	253
2004	5,936	35.4	5,608	35.8	328
2005	7,623	28.4	6,602	17.7	1,021
2006	9,693	27.2	7,917	19.9	1,775
2007	12,181	25.7	9,562	20.8	2,618
2008	14,288	17.3	11,314	18.3	2,974
2009	12,020	-15.9	10,038	-11.3	1,981
2010	15,784	31.3	13,939	38.9	1,845
2011	18,993	20.3	17,416	24.9	1,576
2012	20,501	7.9	18,173	4.3	2,327
2013	22,107	7.8	19,414	6.8	2,693
2014(1월~2월)	3,212	-1.7	3123	10.6	88

자료: 중국 통계청 통계자료(<http://www.stats.gov.cn/tjsj/>)

2. 중국의 무역분쟁현황

1) CIETAC의 연도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설립초기인 19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접수건수가 200여건에 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1995년 중국 최초의 중재법인 <중화 인민과 화국 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이하 “중국 중재법”이라 한다)>의 시행이다.

동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중재체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되게 되었고, 그 결과 CIETAC의 중재사건 접수건수는 급증하여 900여건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중재사건 접수건수는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600여건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두 번째 양적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¹³⁾

CIETAC은 2000년도에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중재규칙(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이하 'CIETAC중재규칙'이라 한다) >을 개정하여, 섭외상사중재사건에 한하던 CIETAC의 관할범위를 국내 중재사건으로 확대하여 이에 따라 CIETAC은 2009년에 약 1,5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559건에 달하는 섭외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재기관의 ICC 중재법원의 동년도 중재사건 접수건수인 817건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¹⁴⁾

물론 CIETAC의 성장 배경에는 상술한 결정적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도 중국정부와 CIETAC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현실적 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조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중재인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보다 엄격한 입장을 견지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지원 조건에 의하여 중국기업들은 중재인들의 능력과 자질에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중재사건의 양적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판정 또는 판결은 자국 미보호의 색채가 강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외적인 비난은 물론, 지방정부의 지역 감싸기 정책 때문에 타지방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를 거부하는 등의 내부적 반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CIETAC은 공정한 중재인의 선정이나 적절한 법을 적용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양적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2) CIETAC의 분회별 중재사건 처리현황

13) 尹娜, "國際仲裁制度的比較分析-中國國際仲裁制度的國際化發展", 雲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p. 10.

14) 김광수, 전제논문, p. 21.

1988년 CIETAC이 설립되면서 관할권인 "대위계약과 상거래 관련 분쟁"은 국제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2000년 CIETAC 중재규칙의 개정에 의한 섭외사건은 물론 국내사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내 중재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북경총회 외에도 1989년과 1990년 그리고 2009년 사천(四川)과 상해(上海) 그리고 중경(重慶)에 각각 화남분회(華南分會), 상해분회(上海分會) 그리고 서남분회(西南分會)를 설치하였으며, 금융 관련분쟁을 전담하기 위한 중재기관으로 2008년 천진국제경제금융중재센터(天津國際經濟金融仲裁中心)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CIETAC은 분회 외에도 24개의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건상담 및 관련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¹⁵⁾

북경총회는 각 분회 및 연락사무소를 관리·감독하는 CIETAC의 모체로서, 설립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상해가 경제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유입과 활동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상해분회의 중재신청 접수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009년에는 상해분회의 중재사건 접수건수는 북경총회의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담보상태에 있는 북경총회의 접수건수를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남분회는 지리적 특성상 홍콩 기업 또는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분쟁사건이 주를 이룬다. 이는 <중국 중재법>이 임시 중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홍콩에서의 외국 중재기관의 판정에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홍콩에서 내려진 임시 중재판정이나 외국 중재기관의 판정은 중국 내에서의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중국 내 집행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홍콩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화남분회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홍콩중재판정의 중국내 집행과 관련한 통지(最高人民法院關於香港仲裁裁決在內地執行的有關問題的通知)>를 통하여 홍콩에서의 임시중재 또는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15) 이승석, "중국지방중재위원회 현황과 CIETAC와의 비교",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5~13.

련하였기 때문에, 중국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화남분회의 중재사건 수리 건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16)董家欣,“国际商事仲裁法律适用及其对我国的启示”, 沈阳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p. 5~6

제 3 절 중국의 무역분쟁 해결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중재제도는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중국은 청나라 말부터 시작되었다. 중재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제도, 특히 독일법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¹⁷⁾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해방구인민정부의 창립과 함께 확립되었으며 초기에는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¹⁸⁾

1949년 중앙인민정부 창립 후 중재와 국내중재의 이중적인 중재제도를 확립하였다.¹⁹⁾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한 후 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조직 간에 발생하는 경제계약분쟁을 업무주관부문에서 중재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촉진에 힘쓰는 한편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재의 효용을 인식하게 되었다.²⁰⁾ 이에 따라 먼저 대외무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할 섭외²¹⁾중재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국내중재는 1960년대 경제 중재를 중심으로 하였고 80년대 기술계약, 노동쟁의, 저작권계약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²²⁾ 중국은 1987년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²³⁾을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全國人民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律釋評』, 北京法律出版社, 1996, p. 1.

18)楊榮新, 『仲裁法理論與適用』, 中國經濟出版社, 2004, p. 93.

19)북경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jac.org.cn>), 2014.2.22. 방문.

20)유경도, "한·중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34-35.

21)'섭외'를 일반적인 '국제'개념에 중국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199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개념과 홍콩·마카오·대만 등 국내 특소요소화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윤진기, "UNCITRAL 示範仲裁法與中國仲裁法的比較", 『중국법 연구』, 제3집, 2000, p. 44.

22)임지한, "한국과 중국의 중재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17.

23)중국 중재법의 주요특징 및 제정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재기구를 행정부문에서 분리함으로써 중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정하여 중재기구의 민간성 확보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²⁴⁾ 1994년 중국의 『중재법』 이 시행되기 전에 14개의 법률, 82개의 행정법규, 190개의 지방법규로 중재에 대하여 규범화하였다.²⁵⁾ 2006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중재법적용에 관한 사법해석²⁶⁾을 마련하여 중재법 체계에 있어 진실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2008년도에 중국 전역 202개 중재기관에서 총 65,074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사건은 1,230건을 차지했다. 이 중재법은 그 동안 중국의 중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혁을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다.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²⁷⁾ 중국 인민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아직 회의적인 상황에서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²⁸⁾ 중재법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심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투자 관련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대내외의 호평을 받고 있다.²⁹⁾

24)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前揭書，p. 1.

25)尹娜，“國際仲裁制度的比較分析-中國國際仲裁制度的國際化發展”，雲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2010，p. 10.

26)중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는데 입법이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하여 '법의 흠결'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입법 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의 기여 측면에서 매우 크다 하겠다. 사법해석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생긴 제도라 할 수 있다. 사법해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첫째 어떤 사항에 관한 법률이 존재치 않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지침을 주고, 둘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해석을 미리 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하급심 법원에 통보하거나, 셋째, 하급심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법률해석에의문이 생기면 상급심 법원에 문의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달한다. 하급심 법원의 법관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임지한, 전계논문, p. 58.

27)盧雲華，『中國仲裁十年』，百家出版社，2006，p. 98.

28)강효백，『중국법통론』，경희대학교출판부，2007，p. 366.

29)沈木洙，『國際貿易法研究』，北京法律出版社，2002，p. 342.

2. 중국의 분쟁해결기관의 발전과정

중국은 1987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중재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개 가까운 지방법규내에서 중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의 중재기구들은³⁰⁾ 그 적용 법률과 중재규칙, 절차 등 면에서 통일되지 못하였고 중재인 또한 행정부문과 관계가 깊었고 중재절차에 대한 강행규정도 많아 중재제도의 발전에 상당히 불리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4년 중국정부는 모든 중재기관과 중재절차를 통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을 제정(1995년 9월 1일 시행)³¹⁾ 그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새로운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통일화되지 못했던 중재기관들도 중재법의 요구에 따라 재조직 되었다.³²⁾

2011년에 전국중재작업보고회의(全國仲裁機矣報告會議)가 중국 귀양(貴陽)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0년에 이르러 재조직된 전국의 중재기관은 국내·국제중재기관을 통틀어 209개로 증가하였으며 중국 중재기구들은 총 78,923건의 사건을 수리하였고, 대상금액은 932억 위안에 달하였다고 한다.³³⁾

<그림2-1> 중국의 중재기구 관련 조직도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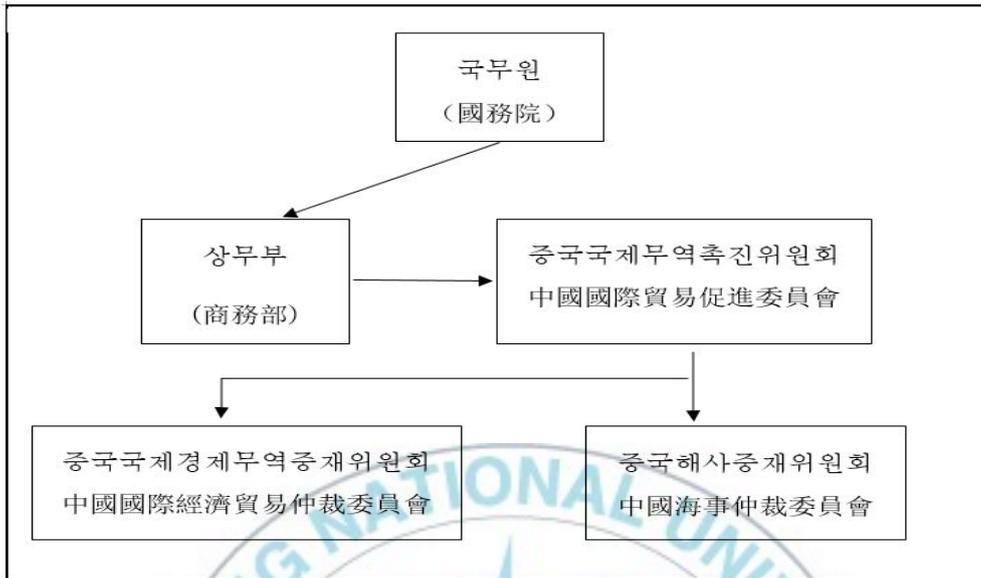
30) 1980년대의<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중재조례>와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등 당시의 중재를 촉진하는 법률들에 의하여 1984년 당시 중국 전역에는 2442개의 중재기관이 존재하였고 1991년에는 그 수가 약 3500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허익법, 전계논문, p. 23.

31) 199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심화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투자 관련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江偉, 『仲裁法』, 中國人們大學出版社, 2009, p. 67

32) 高菲, 『中國特色社會主義仲裁理論研究文集』, 法律出版社, 2004, p. 74

33) 中國新聞網新聞中心, www.chinanews.com, 참조

34) 중국의 국제 중재위원회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와 국제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CIETAC는 국무원 상무부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중국국제상회'내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



※ 국무원은 국가권력기관의 최고집행기관이며, 국무원은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책임을 진다(헌법 제35조). 상무부의 무역조직 관리제도는 정부·기업·운송부문, 비정부지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위의 표시에서 '산하' 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중국 중재법>제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예속의 중재위원회가 국무원(상무부)의 포한된 관계가 아니나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설립부터 관여하며 CIETAC 활동에 지속 관리하기 때문이다.

1)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대외 교역의 증가로 인한 대외무역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국제중재 기관이나 규범화된 중재규칙이 없었으며 단지 각 행정구역이나 성(省)소재지에서 조례의 형식으로 중재에 필요한 자체 규정들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당국은 새로운 중재제도의 도입과 공식적인 중재기관을 설립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54년 5월 6일 국

국제상회와 중재위원회의 역대 주임과 실질적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CIETAC는 명예주석 1인과 부주석 약간 명, 비서장 1 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건의 접수와 중재비용의 수취, 중재절차의 관리, 사건의 조정 등을 포괄하는 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다. 강효백, 「G2시대 중국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p. 367

무원 산하에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³⁵⁾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처리할 사건의 대상과 처리원칙, 중재판정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6년 3월 31일 CCPIT는<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對外貿易仲裁委員會仲裁程序暫行規則>를 통과하고 對外貿易仲裁委員會³⁶⁾를 설립하여 국제상사중재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해사에 관한 국제중재사건을 전담하는 海事仲裁委員會³⁷⁾를 설립함으로써 이후 국제분쟁에 대한 각종 중재사건을 이 두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 두 기관이 바로 중국의 2대 국제중재기관인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이하 CIETAC라고 한다)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이하 CMAC라고 한다)이다. ³⁸⁾

상술한 바와 같이 CIETAC은 원래 국제상사중재만 전담하는 기관이었으나 2000년 10월 1일 부터는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내중재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에는 중재규칙 제5장에 "국내중재에 관한 특별규정" 까지 됨으로써 취급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건처리통계를 보면 CIETAC은 세계 유명 국제중재기관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튼실한 중재기관으로 발전하여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CIETAC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³⁹⁾로서 북경에 본부를 두

35)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88년 6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민간단체인 중국국제상회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OIC)를 조직하여 같은 이름으로 불려진다. 즉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는 "하나의 기관, 두 개의 이름"이다. 중국국제상회는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의 역할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2005년 8월 중국국제상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단법인이 되었으며, 국제상회 중국위원회(ICC China)와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중국국제상회는 ICC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제상회중국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CCPIT, CCOIC, ICC China는 하나의 기관을 칭하는 세 가지 이름인 것이다.

36) 이 명칭은 19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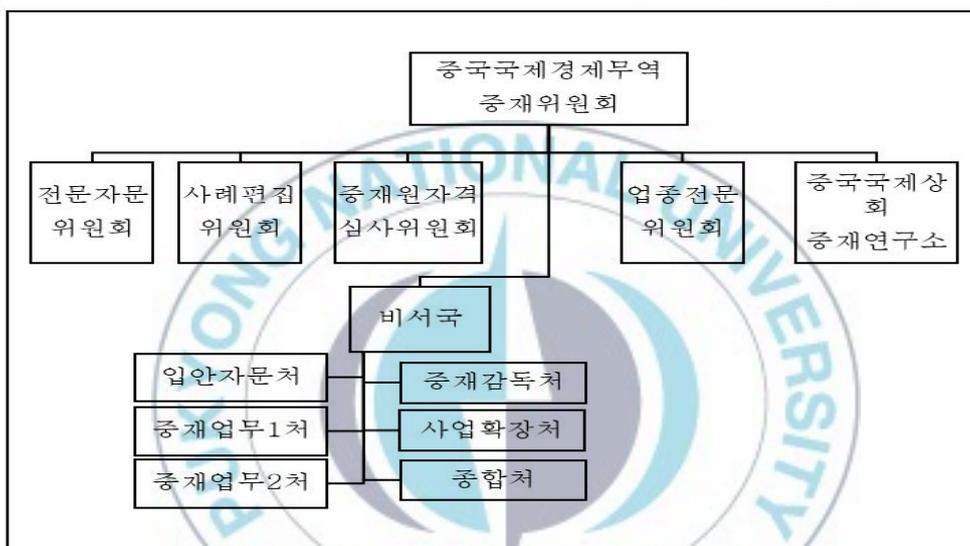
37) 이 명칭은 1988년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38) 오원석 · 이경화, 전계논문, p. 320

39) 중재위원회는 여타의 행정기구에 예속되지 않으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중재법 제 14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듯이 CIETAC과 CMAC를 설립한 CCPIO는 국무원의 산하기관이고 일반중재위원회 또한 인민정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부서 또는 상회의소가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중재위원회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오원석·이경화, 전계논문, p. 321.

고 上海 (상해지부), 深圳(화남지부), 重慶(서남지부), 天津(천진중재위원회) 네 곳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⁴⁰⁾ 전국에 26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와 지부는 하나의 중재위원회로서 동일한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사용하고 있고, 연락사무소는 상담, 연구개발 등의 부속업무만을 취급하고 있다.

<그림2-2> CIETAC의 기구설치 및 구성원



자료출처: 허익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의 법제와 국제화 동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6, p. 76. 참조.

2)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中國海事仲裁委員會, 이하'CMAC'라고 한다)는 중재에 의한 선박, 해상운

40) 북경분부는 1956년에 설립하였고 화남지부, 상해지부는 각각 1989년, 1990년에 설립하였으며 서남지부는 2009년 1월 5일에 새로 설립하였고 천진중재위원회는 1995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다.

송, 보험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의 결정으로 1959년의 1월 8일 창립되었고 별도로 해상중재 잠정규칙을 제정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해상중재의 수요가 늘어나자 1982년 국무원은 해사중재위원회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고, 중재인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1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연해지구 및 항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1984년 11월 2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광주, 상해, 청도, 천진, 대련 등 5개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였고 해사중재 업무는 크게 위축되었다. CMAC는 1988년 중재 잠행(暫行)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1989년 1월 1일 시행하였고 중재법시행 후 대폭 개정한 중재규칙을 1995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현 해사중재규칙은 상해분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조항을 제외하고 CIETAC 중재규칙과 유사하다.⁴¹⁾

3) 중국의 중재사건 취급 실태

중국의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구인 CIETAC에서 처리한 분쟁 수는 2006년에는 981건에 이르렀고, 2007년에는 1118건으로 전년대비 약 12%정도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23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482건 달하였다. 2011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작업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무역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새로운 사건은 1,352건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131건 감소하여 약 8.83% 내려갔다. 그중涉外 사건은 418건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142건 감소하여 약 25.36% 하락하였다. 국내사건은 934건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11건 증가하여 약 1.19% 증가하였다.⁴²⁾

사건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새로 접수된 사건 수는 하락하여 또는 상승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 중 국제사건 사건 수가 감소가 크고 국내 사건은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간소한 절차로 처리 가능한 사건 비중이 총 사건 건수의 45.34%를 차지하였다. 사건 관계자의 지역적 범위가

41) 원양 및 연해 등에서 운송, 생산과 항해 과정 중에 발생한 해상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국무원(国务院) 결정에 따라 1959년 1월 설립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상설중재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다.

4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cn.cietac.org>) 뉴스참조.

보다 넓고, 당사자는 중국 이외의 51개의 국가와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유사한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건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았다. 43)

<표 2-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연도별 분쟁처리 현황

년도	북경총회	상해분회	화남분회	천진금융센터	서남분회	총계
2013	1058	159	18	10	11	1256
2012	975	37	16	19	13	1060
2011	668	532	218	21	5	1435
2010	672	476	182	12	10	1352
2009	650	610	216	3	-	1482
2008	598	427	204	1	-	1230
2007	630	332	156	-	-	1118
2006	495	306	180	-	-	981

<표 2-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연도별 섭외사건 분쟁처리 현황

년도	북경총회	상해분회	화남분회	천진금융센터	서남분회	총계
2013	322	43	7	0	3	375
2012	303	16	5	3	4	331
2011	237	149	80	4	0	470
2010	241	102	70	1	4	418
2009	300	167	90	2	-	559
2008	288	152	107	1	-	548
2007	251	106	72	-	-	429
2006	240	99	103	-	-	442

※자료출처: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辦理案件情況」,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cn.cietac.org>) 2014.3.3.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함.

4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cn.cietac.org>) 뉴스참조.

3. 중국 중재의 수립과 집행 과정

(1) 중재신청⁴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서와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에서는 ①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기업 및 주소 또는 법인이나 가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②중재청구와 그 근거되는 사실, 이유 ③ 증거취득 경위, 증인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중재시효를 지켜야 한다. 중국 중재법 제74조는 "법률이 중재시효에 대해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신청이 제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 중재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비용을 수취하는 기준에 대하여 물가관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재신청서의 수리와 거절

중재신청서수리 후에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분,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송달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후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역시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못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⁴⁵⁾

44) 이해한, "중국의 중재제도", 법조, 2003, p.15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에도 신청인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反訴와 유사한 反訴求를 제출할 수도 있다.⁴⁵⁾ 피 신청인이 反訴求를 할 경우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60일내에 서면형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중재인 선정

당사자 간에 중재인선정이나 선정방법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와 중재인 선임방법을 합의하고도 어느 일방의 선임절차 불이행으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인선정에 문제가 발생된다.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중재인을 중재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일방에게 편향되게 선정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중재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객관적인 중재인 선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4) 중재인 회피 및 기피

중재인은 중재심문의 직접적인 집행자이므로 중재인의 인품, 지식 등의 요소는 사건에 대하여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또한 중재사건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는 중재인의 회피 및 기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기피와 회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회피라는 사용하고 있다.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일단 중재인과 사건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해 중재인은 마땅히 회피되어야 한다. 소위 이해관계란 곧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의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중재인과 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45) 중국 중재법 제 24 조

46) 중국 중재법 제 27 조

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이 이미 공정한 심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사건의 판정 전에 중재인이 분명하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뚜렷한 기울어짐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이 드는 때에는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당해 중재인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⁴⁷⁾

중재법은 기피와 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회피와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맡았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다.⁴⁸⁾ 중재인이 회피와 기피로 인하여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당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할 중재인을 다시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⁴⁹⁾

(5) 중재판정의 취소

중국 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⁵⁰⁾

① 중재합가 없는 경우, ② 판정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가 아니거나 중재위원회가 권한 없이 중재한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④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⑤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⑥ 중재인이 해당 사건의 중재과정에서 뇌물수수·부정행위·위법판정을 한 경우, ⑦ 해당 판정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다.

당사자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⁵¹⁾ 인민법원이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중재판정부

47) 중국 중재법 제 29 조.

48) 중국 중재법 제 36 조, CIETAC중재규칙 제 30 조

49) 중국 중재법 제 36 조, CIETAC중재규칙 제 31 조

50) 중국 중재법 제 58 조.

가 다시 중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정부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중재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취소절차는 중지한다. 관 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각국은 독자적으로 사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 타국에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효력을 발생 시키려면 승인과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승인이란 타국에서 행해진 사법적 판단을 인정하겠다는 사법적 의사표시이고, 집행은 타국에서 행해진 사법적 판단에 강제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승인과 집행은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논리적으로는 승인 절차가 집행 절차에 선행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승인과 집행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승인 절차만 있고 집행 절차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 중재법은 뉴욕협약이나 UNCITRAL⁵²⁾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은 집행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지만, 집행은 승인됨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은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⁵³⁾ 중재판정의 집행은 승소한 중재신청인 이 그 판정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 법원은 뉴욕협약 체결국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의 심사하는 뉴욕협약 제5조 규정에 따른다.

둘째, 중국 법원은 뉴욕협약 비체약국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중국의 무

51) 중국 중재법 제 59 조.

52)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1966년 열린 제2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 2205호에 의거해 설치되었다.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을 촉진하고 신조약의 완성안 및 기존 관행의 성문화를 추구하며,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53) 목영존,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0, p. 240.

역 사대국들 대부분은 뉴욕협약 체약국이기 때문에, 중국 법원이 호혜원칙을 근거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심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⁵⁴⁾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이 외국중재판정 및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및 집행거부 판결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 처리에 관한 관련문제의 통지’(關於人民法院處理涉外仲裁及外國仲裁事項有關問題的通知)를 공포하였다.⁵⁵⁾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상기의 통지에서 인민법원이 섭외중재판정의 취소, 섭외중재판정의 집행거부,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 법원의 특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 보고 제도를 확립하였다. 즉 하급 법원이 섭외 중재판정의 취소, 섭외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 그리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 인민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고 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이 사전 보고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 직권으로 집행 거부 판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재심을 명하거나 직접 분쟁을 심사할 수 있다.

5. CIETAC 2012중재규칙의 특징

CIETAC(무역경제중재위원회의 약칭)는 중국에서 최초로 성립된 중재기구인바 CIETAC의 《중재규칙》은 2005년에 반포되고 실시된 후 부터 중재 실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경제와 중재환경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중재사용자들은 CIETAC의 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고 중재절차의 설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대를 제기하였기

54) 하현수·윤충원, "중국 내륙과 홍콩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 33 권 제 5 호, 한국무역학회, 2008. 11, p. 142;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 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 15 권 제 2 호, 한국중재학회, 2005. 8, pp. 270~271.

55)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섭외중재기관의 판정을 집행신청 하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에 외국중재기관의 판정을 승인 및 집행 신청하는 경우에,……집행의 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판결을 하기전의 필히 관할 고급인민법원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집행의 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견을 최고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을 받은 이후 판정의 집행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거부가 가능 한다."

때문에 CIETAC는 《중재규칙》을 수정하고 개선시켰다.”⁵⁶⁾ 새로운 CIETAC 《중재규칙》은 2012년 1월 5일에 CIETAC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2년 2월 3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의 허가를 거쳐 2012년 5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2012년 무중위의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⁵⁷⁾

첫째, CIETAC 각 기구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CIETAC 《중재규칙》 제 2조에서는 CIETAC의 각 기구 및 그들의 직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2조 제6항에서는 “ 당사자는 논쟁을 중재위원회 혹은 중재위원분회/센터에 제출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바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중재위원회비서실에서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안건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회/센터에서 중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분회/센터 비서실에서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안건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속한 분회/센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속이 확실치 않은 것은 중재위원회 비서실에서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안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논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신CIETAC 《중재규칙》은 안건관리의 총회와 분회의 분업을 명확히 하였다.⁵⁸⁾

둘째, 당사자 의사자치원칙 (意思自治原則) 에 대한 존중을 체현하였다. 2012년 CIETAC 《중재규칙》의 여러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충분히 존중하였고 당사자가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CIETAC 《중재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속에 의거하여 계약성 혹은 비계약성 경제무역 등 논쟁 안건을 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제5조 제3항에서는 중재협정의 적용법은 중재협정의 형식 및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지점에 대하여 약속하였을 경우 그 약속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7조 제2항에서는 보증하여 당사자가 중재지점에 대하여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확실치 않을 경우 안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센터 소재지를 중재지점으로 하거나 중

56) 陈胜·谢日曦, “2012年度中文期刊仲裁文献综述”, 「北京仲裁」, 제83권 제4호, 2013

57) 宋连斌·彭丽明, “2013年中国商事仲裁年度观察”, 「北京仲裁」, 제83권 제1호, 2013

58) 于健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2012年版「仲裁规则」解读』, 『人民法院报』 2012年4月25日。

재위원회는 또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지점을 중재지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24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단에 없는 중재원을 선정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혹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거하여 지정한 인사는 중재위원회 주임의 합법적인 확인을 거친 후 중재원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47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안건 실체 적용법에 대하여 약속하였을 경우 그 약속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그 약속이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충돌될 경우 중재재판소에서 안건 실체의 법률 적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71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언어에 대하여 약속하였을 경우 그 약속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절차는 중국어를 중재언어로 하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언어를 중재언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CIETAC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중재원의 국적, 중재지점 혹은 중재안건의 개정심리지점, 중재절차언어, 중재안건의 심리방식 등을 약속하는 것을 허락하는바 당사자의 의사자치원칙을 존중하였다.⁵⁹⁾

셋째, 절차 부분에서 더욱 완벽해졌다.

1. 합병중재를 규정하여 이 부분에서의 현행 《중재법》의 부족함을 보충하였다. "CIETAC 《중재규칙》 제 17조에는 합병중재 내용과 연관되는 규정이 3개가 있는 바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고 기타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후, 혹은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각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후 중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된 2개 혹은 2개 이상의 중재 안건을 하나로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⁶⁰⁾ 제2항에서는 상술 제1항에 의거하여 합병 안건을 결정할 때 중재위원회는 관련 중재 안건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거기에는 서로 다른 중재안 건의 요청이 동일한 중재 협의에 의거하여 제기된 것은 아닌지, 서로 다른 중재안 건의 당사자가 같은지, 서로 다른 안건의 중재원 선정 혹은 지정 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3항에서는 각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합병한 중재 안건을 중재절차의 제일 앞부분에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9) 宋連斌·彭丽明, 전계논문, 「北京仲裁」, 제83권 제1호, 2013

60) 冯晓璐, “CIETAC2012仲裁规则与AAA2009仲裁规则之对比分析”, 『法制博览』, 第十期, 2012.

2. 중재보전 및 임시조치의 규정을 개선하였고 최초로 중재재판소의 임시 조치를 취하여 결정하는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비서실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당사자의 보전 신청을 당사자가 명확히 지적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을 거쳐 중재재판소에서는 적용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여기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시조치를 요청한 일방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중재재판소에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결정은 절차 혹은 중간재 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중재절차 중지에 대한 규정을 증가시켰고 이 부분에서의 《중재법》의 입법 공백을 보충하였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중재절차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이 나타날 경우 중재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절차를 중지시키는 원인이 사라졌거나 절차 중지기간이 지났으면 중재절차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서는 중재절차의 중지 및 회복은 중재 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중재재판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비서실장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중재와 조정이 서로 결합된 부분에서 조정은 서로 안건을 종결하는 규정을 증가시켰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45조 제6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청하였을 경우 조정문서에는 반드시 중재요청과 당사자 서면 협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중재원이 서명하며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고 당사자 쌍방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중재원지정 및 중재재판소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시켰고 다자당사자안건 중재재판소의 구성방식을 개변시켰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27조 제3항에서는 만약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각 측이 공동으로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각 측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한 명을 지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재판소에서 3명의 중재원을 지정하고 그 중의 한 명을 수석중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6. 서면검증에 대한 규정을 개선시켰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40조

제2항에서는 서면심리안건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혹은 개정된 후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면검증을 동의하였을 경우 서면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바 서면검증을 진행할 때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재판소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서면검증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분쟁금액을 인상시켰고 간이절차와 보통절차의 변경조건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2012년 CIETAC 《중재규칙》은 간이절차를 적용한 안건의 금액을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인상시켰다. 즉 CIETAC 《중재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분쟁 금액은 모두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혹은 분쟁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였지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신청을 거쳐 다른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었으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CIETAC 《중재규칙》 제61조에서는 중재요청의 변경 혹은 반소는 간이절차의 계속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경된 중재신청 혹은 반소가 분쟁 금액이 각각 200만 위안을 초과한 안건과 연관될 경우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중재재판소에서 보통절차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 버전의 CIETAC 《중재규칙》은 선진한 제도, 국제화와 현대화를 체현한 중재 규칙이다. 새로운 규칙은 광대한 중재원, CIETAC 및 그分会의 직원, 판사, 그리고 국내외 중재영역 학자와 변호사의 경험과 지혜를 응집하였고 중국인과 외국인당사자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⁶¹⁾

61) 于健龙, 转载论文, 『人民法院报』, 2012年4月25日。

제 III 장 중국의 무역거래 조건별 분쟁 사례분석

제1절 계약조건별 분쟁사례분석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2009년 출판한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 판결서 선집> 시리즈 총서에 북경 분회, 화남 분회, 상해 분회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종류별 대표 사례로 구성한 판결서 140편을 수록했다. 그중 당사자 쌍방이 화물 매매계약 조항을 체결할 때 규범에 맞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발생한 분쟁은 총 58편, 40%를 넘었다. 그 가운데서 국제무역실무에서 계약 조항의 정확한 체결, 계약 조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쟁 발생 후 계약 조항에 대한 법적인 관련 규정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쟁취 등이 매매 당사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란 것은 알 수 있다.

본 장에서 다양한 계약 조항이 초래한 무역분쟁 중의 대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례별의 특징 및 근년에 중국 중재기관이 그 분쟁들을 처리하는데 존재한 문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품질조건사례

사건의 개요는 2000년 1월 20일 미국 A회사와 중국 B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B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A회사로부터 한국산 핸드폰 부품 구입, 계약 관련 금액은 총 8만 달러, 2월 10일 전 발송, A회사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목적지 도착 후 12개월이다. 2월 7일 A회사는 계약 조항에 맞는 제품을 납품했다. 2월 20일 화물 도착 후 B회사가 검사회사에 제품검사를 맡기고 검사증명을 받았다. 2001년 3월 25일 B회사는 제품 사용 시 일부 제품이 품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교환 또는 반품, 그리고 그로 발생한 일체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A회사는 제품 입고 전 상세한 검사, 확인을 걸쳐 사용 중의 이

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B회사가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제품 품질에 이의가 있으므로 제품 수령 후 13개월째인 2001년 4월2일, 자체로 해당 제품을 중국 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검사기관 발급한 검사증서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제조불량에 따른 5종목의 결함이 운송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4월 5일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중재를 제기해 A회사에게 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가 2번째 검사를 보낸 제품이 납품된 제품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검사 시기가 또한 배상청구의 유효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품검사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를 거쳐 B회사는 정한 시간 내 제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한 이유로 B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A회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다.⁶²⁾

품질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중국의 A회사와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각각 2003년 4월 26일, 2003년 9월 2일과 2003년 9월 20일에 3부의 판매 확인서를 체결하였는바 A회사가 인도네시아의 B회사에 티셔츠, 러닝셔츠 등 방직품을 판매하고 확인서 3부의 총금액은 912,141 달러이며 지불방식은 D/A 90일로 정하였다. 상술 확인서가 체결된 후 A회사는 계약에 따라 전면적으로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화물 품질 등 원인으로 20,000 달러의 대금만 지불하였다. B회사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디스카운트 혹은 나머지 화물을 A회사에 반품하는 등 해결방법을 제기하였지만 각 회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A회사는 판매확인서 중에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 신청을 제기하였는바 B회사에 1,712,141달러의 대금을 지불할 것. 2. 상술한 대금의 이자 4467.50 달러를 지불하며 본안의 중재비용과 갑회사의 대리비용 등을 지불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심사 처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신청인에게 전부 대금 및 이자 716,608.50을 지불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으며 중재비용은 B회사에서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B회사에서 제기한 반품, 디스카운트 등 주장

62)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华中科技大学, 2008, pp. 85-86.

에 대해서는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⁶³⁾

품질조건에 관한 세 번째 사례에서는 중국의 A회사와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2003년 1월 24일에 방직 원단 5,000m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원단은 모 시 (市) 가공업체의 위탁으로 수입한 것이고 유럽공동체에 수출 될 의상을 가공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계약에서는 OKO-TEX100표준에 따르고 그 중에서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100PPM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단가는 3달러/m 이고 일람불신 용장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무역용어는 CIF를 사용하고 계약에서 규정한 검증조항은 다음과 같다.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서 하역된 후 30일 내에 중국 상품 검사기관의 재검사를 거친 후 품질 혹은 규격이 본 계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보험회사 혹은 선박회사의 책임을 제외하고 판매 측은 화물 수취를 거절하거나 상품 검사기관의 검증 증서에 의거하여 판매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3월 9일, B회사는 인도의 상품검사기구에 검증을 신청하였고 증서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100PPM이라고 밝혔다. 그 후 중국 상해로 운송되었다. 3월 29일, 화물 하역이 끝났다. 이와 동시에 B회사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다.

A회사가 모(某)의류 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품질은 대외무역 계약과 같다. 4월 12일, 모(某)의류 가공업체는 화물을 받은 후 상품 검사기구에 화물 검증을 신청하였고 4월 20일에 상품 검사기구에서는 화물 품질 검증 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102PPM으로서 계약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의류 가공업체는 신속히 A 회사에 이 소식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A 회사는 보고를 받은 후 4월 25일에 B 회사를 통지하였고 상품 검사증명서를 송부하여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물 전부를 반품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5월 5일 B 회사는 답장을 보내어 화물을 샘플링 하여 재검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5월 21일 B회사에서는 직접 화물 샘플을 들고 6월 5일에 스위스방직품검증유한회사 중국대표부에 보내어 검증하였다. 해당 대표부에서는 7월 3일에 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화물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101PPM으로서 계약 규정보다 약간 높다고 하였다.

63)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华中科技大学, 2008, pp. 89-92.

그 후 쌍방은 품질 검증서 2부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분쟁하였고 협상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A회사에서는 중재를 제기하였다.

A 회사는 본안의 계약은 품질보증이기 때문에 양륙 30일 이내 품질 납품에 속하고 중국 상품 검사기구의 재검증서는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쌍방이 사전에 약속한 것이고 검증 절차가 합법적이며 결과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B회사는 화물이 발송지에서 적재될 때의 품질이 계약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B회사에서는 계약 규정에 부합되는 화물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에서는 서로 다른 검증 표준과 검증 수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두 차례 검증결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화물의 포름알데히드 함량 지표가 계약에서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근거하여 화물의 품질이 계약의 규정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고 판매 측 B 회사는 계약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재재판소의 조정을 거쳐 각 측은 화물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의류 가공업체는 해당 원단으로 생산한 의상을 기타 국가로 수출하기로 하였다.⁶⁴⁾

상품 검사 표준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에 규정한 강제성적인 상품 검증 표준 혹은 기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는 상품 검사 표준의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 혹은 행정 법규에 어긋난 표준도 규정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 중에서 약속한 상품 검사 표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본안에서 계약은 검증, 재검사를 규정하였고 최종 검증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증 조항도 비교적 완벽했다. 실제 이행과정에서 조항 규정 외에 검증 및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성을 보장하려면 당사자는 또 다음과 같은 몇 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검증은 반드시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상품 검사기구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상품 검사증서도 해당 기구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64)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裁決書選編(2003-2006)』, 法律出版社, 2009, pp. 280-294.

구매 측은 반드시 약속한 상품 검사기구에서 발급한 유효 상품 검사 증서를 의거로 판매 측에 손해배상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 구매 측이 화물의 품질, 수량, 중량 혹은 포장이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설사 구매 측이 계약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판매 측에 손해배상 요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약속한 유효 상품 검사 증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는다.

구매 측은 반드시 약속한 유효 상품 검사 증서에 의거하여 계약에서 규정한 손해 배상 기한 내에 판매 측에 배상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임의의 배상 청구 기한을 초과한 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모두 유효한 것이 아니다. 본안에서 A 회사는 계약에서 규정한 배상 청구 시간 내 판매 측에 배상 요구를 제기하였다 (세 번째 검증은 배상 청구 기한을 30일 초과하였음).

2. 포장조건사례

포장조건에 관한 사례에서는 중국의 A 회사는 덴마크의 B 회사와 2003년 1월에 편지와 전보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국 측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화학 공업 원료를 판매하고 가격조건을 CIF조건으로 정하였다. 포장조건은 해운(packing in seaworthy packing)에 적합한 포장으로 정하였다. 보험은 판매 측에서 해결하되 배상 조건은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여 판매 측의 동의를 거쳐 검증 인원이 증명한 후 수량과 규격 문제는 15일 내, 품질 문제는 90일 내에 구매 측이 판매 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 덴마크 회사는 화물 중에 일부 Pallet과 봉지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증행(公證行)을 초빙하여 화물을 검증하였고 계속하여 육상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파손된 Pallet를 스스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다. 구매 측은 5월에 편지를 보내어 판매 측에게 파손된 화물을 다시 포장하고 사용된 기타 모든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판매 측이 거절을 하자 같은 해 10월 구매 측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하였

다.

상해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해 12월에 쌍방은 협상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였다. 구매측이 소송을 취하하였고 더 이상 Pallet 수리비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판매측도 상대방에게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주로 구매측이 직접 25kg의 소포장으로 하역하여 증가된 비용이다. 이로써 본 사건은 끝을 맺었다.⁶⁵⁾

이 사건은 매매계약 중에서 반드시 포장재료, 포장 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거래 쌍방이 포장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상하였거나 장기적인 업무 왕래로 이미 일치한 인식을 달성하였다면 몰라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쟁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습 포장”, “관용 포장”, “해운 적합 포장” 등 모호한 규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중에서 포장 조항을 규정할 때 포장 재료와 포장 방식을 규정하여야 하는 외에 상품의 특성과 운수 방식의 특징도 고려하여야 한다.

포장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국외 고객사 B 회사는 2006년 1월에 국내 A 회사의 1*20 컨테이너 상품을 주문하였다. 1*20컨테이너 상품은 두 가지 규격이 있다. 매한가지 규격은 또 두 가지 포장이 있는데 각각 두 종류의 최종 수용자를 가지고 있다. 즉 상품 포장 종류가 모두 4가지인데 매한가지 100컨테이너 씩 모두 400컨테이너를 주문하였다.

A 회사는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시리얼 넘버를 부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문서에 구체적인 모델 뒤에 시리얼 넘버에 따라 컨테이너 넘버를 부착해 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시리얼 넘버에 따라 컨테이너 넘버를 정하지 않았고 제품 넘버 역시 전부 똑같았다. 그 결과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고객사에서는 화물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고객사에서는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열고 확인해야만 했고 이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중재 재판소의 조정결과에 따라 A회사는 B회사를 향해 인건비를 배상하였다. ⁶⁶⁾

65)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華中科技大學, 2008, pp. 52-55.

66)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華中科技大學, 2008, pp. 45-48.

3. 운송조건사례

운송 조건에 관한 사례에서는 2005년 7월 15일 신청자 및 피신청자는 본 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염화칼슘 51,000톤을 판매 가격은 톤당 FOB S.T.125달러, 대금 지급 방식은 전신환, 선적항은 XX 항, 목적항은 미국 XX이다. 그 후 쌍방은 본 건 계약 이행 관련 분쟁을 벌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건 계약 제7조 중재 조항을 의거하여 신청자가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제기했다. 신청자는 본 건 계약 체결 후 피신청자가 화물 공급기간에 신청자에게 화물 공급을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본 건 계약에서 정한 화물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해 미국으로 보냈다. 따라서 피신청자가 화물 가격 이상, 운임 증가로 인한 발생한 화물대금 및 운임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피신청자는 본 건 계약에서 약속한 지급 방식은 ‘전신환’이긴 하지만, ‘착불’이나 ‘선불’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항이 없었다. 신청자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신청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이유로 화물 인도를 거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소는 계약 이행 기간에 피신청자가 선불을 요구한 증거가 없었으며 신청자가 화물 인도를 요구할 때도 피신청자가 동시 이행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 조항에 관련해서는 계약에서 전신환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여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무역 관례를 참조하여 서류상 환불, 즉 서류 제시 시 대금 지급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피신청자의 화물 인도의 무 불이행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신청자가 신청자에게 화물대금 및 해운 운임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⁶⁷⁾

운송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신청자 중국 B사와 피신청인 영국 A사. 2000년 7월~9월 쌍방은 피신청자인 신청인에게 CIF가격으로 총 468,800달러의 화물을 판매, 납품기일은 10월, 11월, 12월, 최종 납품기한은 2000년 12월31일 등 내용을 기재한 매도계약 3부를 잇따라 체결했다.

67) 黃亞英, “我國商事仲裁疑難問題及其最新典型案例分析(二)”, 『仲裁與法律』, 第120輯, 法律出版社, 2011, pp107-110.

피신청인은 국내외 시장 가격 폭등으로 국내 화물 공급원이 부족해 납품 시 가격이 이미 1~2배 증가했다. 계약 체결 시의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계약가격대로 납품할 의무는 계약 이행 시의 환경과 계약 체결 시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납품기일 만료 시 인도지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청자는 ‘협약’에 따라 이윤도 손해 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당시 국제시장가격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인도지 시가를 부정했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매도자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미 계약에 벗어나 신청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피신청인이 계약 불이행 이론을 인용해 계약에서 정한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인도지 영국 맨체스터의 시가에 대한 합리적 증명을 제시할 수 없어 항변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신청자에게 계약 3부의 이윤 합계 550.880달러 및 계약 3부 중 2부의 신용장 변경과 통지 비용 683,31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재비용은 신청자 10%, 피신청인 90%가 할당되었다.⁶⁸⁾

이 사건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제79조 제1항에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은 제어 불가의 상황,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상황,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예견 및 제어 불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제무역에서의 불가항력이다.

이 사건의 적용 법률은 영국법이 아닌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어야 한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가격은 불가항력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국제시장 가격 변동 리스크를 미리 예견해야 한다. 중국 법률에는 ‘계약 불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계약불이행 ‘frustration of contract’은 영미법계의 전문용어로서 계약 체결 후 쌍방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상실되어 쌍방 당사자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된다). 이 사

68)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华中科技大学, 2008, pp. 113-115.

건의 상품 가격변동은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명확한 불공평’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피신청인의 항변이 법적 기반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4. 보험조건사례

보험조건에 관한 사례에서는 2001년 9월 20일, 중국 A 회사와 네덜란드 C 회사는 500톤의 코코아 콩을 구입할 때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FOB, 신용장 지불 조건하에 선적 기한은 11월이었다. 9월 28일 A 회사는 D 회사와 가공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에서 D 회사에 500톤의 코코아 콩 가공을 위탁하고 D 회사에서는 가공 완성품을 A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11월 19일 중국 인민보험회사 E 분사는 해당 화물 운수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서류에 기재된 피보험 인원 A 회사였다. 코트 디브와르로 부터 중국 상해까지 운송하기로 하였으며 보험 종류는 올 리스크였다. A 회사는 보험료를 지불하였다. 11월 20일 일본의 F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하였는데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송하인은 S회사이고 인수자는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수해야 한다. 통지인은 A회사와 D 회사이다. 선적항은 상아해안이고 목적항은 중국 상해이다. 화물은 7700포대의 상아해안 코코아 콩인데 총 500톤이다. 뒷면은 각기 송하인 S회사, 판매 측 C회사, A회사 및 D회사였다. D회사는 선적 증권을 근거로 일본 F회사에서 물건을 인수해야 한다.

12월 21일, 해당 화물은 세관 신고를 했다. 12월 29일 원고 E보험회사는 피고 일본 F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2년 1월 15일, 중국 수출입 상품 검증 총 회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검증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화물이 105톤 손실하여 그 가격이 835달러에 달한다고 증명하였다. 손실원인은 컨테이너가 운송과정에 바다물의 침적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초보적으로 판정하였다. 2002년 3월 8일, A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서 및 권익양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손익배상금 1,157,824.01위안을 받았음을 증명하였다. 동시에 배상을 받은 부분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 권리를 E보험회사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상해해사법정의 심사결과는 선하증권 배서는 운수 계약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 때 선하증권은 이미 A회사에서 D회사로 양도되었으므로 D회사는 선하증권을 근거로 계약운송업자에게서 화물을 인수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운수계약 권리와 의무는 이미 양도되고 A회사와 D회사의 위탁가공 및 대리 화물인수 관계는 종렬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계약운송업자와 보험인을 포함한 제3자와 대항할 수 없다. 판결에서 신청자의 신청은 기각 되었다. 69)

5. 중재조건사례

중재조건에 관한 사례에서는 2002년 천진 A사가 국내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미국 B사의 대리인 홍콩 주민 劉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A가 B로부터 활착률 85% 이상의 충란(사료)을 구입, 지급 방식은 신용장이라고 약속했다. 상품 입고 후, A는 즉시 상품검사검역국에 검사를 맡겼다. 천진 상품검사검역국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충란의 활착률은 계약에서 규정한 85%보다 훨씬 낮은 10% 안팎밖에 안 돼 불합격 상품으로 검정되었다. A가 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B는 그것을 회피했다. 따라서 A는 중재를 제기해 B에게 모든 상품을 반품, 대금 168,000달러를 환급 및 거래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했다. 한편, B는 CFR 계약의 성질에 따라 선적 후 사건으로 인한 화물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 및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에 A의 중재 청구를 기각해 중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데 지급한 일체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 중재 과정에서 쌍방은 A와 B의 계약관계, 중재 관할권 및 상품 품질 결함 등 원인과 책임 등 쟁점을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을 지탱하기 위해 몇 차례의 진술, 반박을 벌였다. 중재재판소는 서면 자료 및 법정 심문에서 밝힌 사실에 따라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B의 진술은 지지하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⁷⁰⁾

69)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裁決書選編(2003-2006)』, 法律出版社, 2009, pp. 382-396.

70)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裁決書選編(2003-2006)』, 法律出版社, 2009, pp. 454-465.

본 건 계약은 A가 매수자로서 매도자 B의 대리인 劉씨와 팩스로 체결한 것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B의 요구대로 몇 차례 수정하였다. B는 신용장에 규정한 선적 기간 내에 화물을 탁송해 대금을 받음으로써 실제 이행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아들여 계약을 발효하게 했다. 게다가 劉씨를 통한 계약 체결은 A와 B 사이의 관행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계약만큼 거기에 약속한 중재조항이 양자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다는 A의 입장이다.

한편, A와 B사이에 공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없으며 중재계약이나 조항이 없으므로 중재위원회가 본 건을 수리한 근거가 없다고 B가 주장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첫째, 본 건 계약은 홍콩 劉씨가 체결한 것이었다. 하지만 B는 서류에 서명한 권한을 劉씨에게 부여한 적 없었다. 본 건 계약은 단순히 A가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신용장을 받기 전에 B가 그 어떤 경우에도 계약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었다. 또한 B는 1월 7일 이전 계약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 본 적 없었다. 둘째, 계약에서 劉씨가 천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힌 바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체결 시 유 씨가 천진에 없었다. 셋째, 선적기한은 2002년 12월 말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선적 일은 계약 효력을 잃은 이듬해 2월 3일이었다. 넷째, A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제18조 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행 또는 관례를 바탕으로 본 건 계약이 성립된다고 간주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B가 A와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어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관례나 관습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劉씨가 B사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 건 계약을 체결했다. A는 계약에 따라 본 건 계약의 일련번호를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과 아울러 상업 송장에서 이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요구했다. B는 A가 개설한 신용장 및 그 후의 수정을 근거해 화물을 탁송하고 대금을 수령했다. 상술한 사실을 근거로 유씨의 B사 명의로 본 건 계약 체결의 사실을 B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B는 A에게 劉씨에 대한 권한 수여를 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 교부 및 대금 수령의 행위로 본 건 계약을 확인했다는 중재재판소의 견해였다.

따라서 중국 민법 통칙 제66조 "본인은 타인이 본인 명의로 실시한 민사 행위를 알면서도 부인하지 않은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라는 규정에 따

라 유 씨는 B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유권 대리행위이었다. 그리하여 본 건 계약은 A, B 사이의 유효계약이며 그 모든 조항(중재조항 포함)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됐다. 그 외에 劉 씨 계약 서명 시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기재한 체결 제의 법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본 건 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중재재판소가 판정했다.

중재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2003년 2월 16일 중국 A 회사는 독일 B 회사의 강판을 구매할 때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의 체결한 계약과 신용장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 측 독일 B 회사는 2003년 4월 20일 전에 해당 화물을 배에 적재해야 한다. 4월 24일 독일 B 회사는 A 회사에 4월 20일 배에 적재해 출항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A 회사는 B 회사가 적시적인 화물을 배에 적재해 출항시켰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A 회사가 운수회사의 사이트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B 회사는 실제로 4월 20일이 아닌 4월 23일에 화물을 배에 적재했던 것이다. A 회사는 곧바로 운수회사에 연락해 B 회사에서 확실히 4월 23일에 화물을 배에 적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사는 B 회사가 계약서 및 신용장 중의 화물 적재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하증권 등 증명서는 신용장의 요구와 일치하게 작성되었고 독일 B회사는 이미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해갔다. A 회사는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 중재절차를 가동했다. 5월 27일 쌍방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체결하기까지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⁷¹⁾

적시적인 합당한 중재를 신청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하려면 해당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때문에 중국 회사에서는 이 면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6. 가격조건사례

가격조건에 관한 사례에서는 2006년 6월 20일, 중국 홍콩의 A회사와

71) 朱偉東, “中國涉外仲裁協議效力的認定”, 『仲裁與法律』, 第116輯, 法律出版社, 2010, pp. 41~63.

대륙의 B 회사가 광주 (廣州) 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 회사는 A회사로부터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과 수리 설비를 구입하였고 가격 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얻어냈다. A회사는 6월 15일에 B회사에 전화하여 시장에 일본산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고 가격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B회사는 6월 20일에 답장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중국의 대만 지역 혹은 한국의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즉시로 물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부품 원산지 조건 변경 후의 제품 가격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지 않았다. 6월 27일, A회사는 B회사에 계약에 규정된 수량의 화물을 제공하였고 송장 금액은 10만 달러이다. B회사는 상술한 부품의 원산지가 모두 한국과 중국의 대만 지역이라는 것을 검증한 후 7월 25일에 상품 검사부서의 검증 증서를 획득하였다. B회사는 5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9월 25일, A회사는 B회사에 나머지 5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10월 5일, B회사는 A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해당 화물은 일본산이 아니므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교환할 수 없으면 반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A 회사에서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답장을 보내어 화물은 이미 상품 검사부서의 검증을 거쳤고 B 회사도 화물이 입고되기 전에 이미 상세하게 검사하고 확인하였으며 이미 사용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거절하였고 B회사에서 나머지 5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줄곧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12월 25일에 중재를 제기하여 B회사에서 즉시로 나머지 5만 달러의 대금과 이자 손실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사처리 과정에서 B 회사는 대금의 가격은 일본산 제품의 표준으로 제정하였으나 A 회사에서 제공한 제품은 일본산이 아니므로 가격차도 아주 크기 때문에 비정품 납품으로 정품의 가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A 회사에서 제공한 화물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갑회사의 상환 요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에서는 B 회사에서 나머지 대금 5만 달러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⁷²⁾

화물의 가격조건에 대하여 계약 쌍방은 화물의 원산지 변경을 협상할 때

72)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裁決書選編（2003-2006）』，法律出版社，2009， pp. 491-505.

화물의 가격 조정에 대하여 협상하지 않았고 B 회사는 화물과 송장을 받고 상품 검사 기관의 검증과 자진 검수를 통하여 줄곧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가격과 송장 가격에 따라 실제로 일부분의 대금을 지불하였고 화물의 가격에 대하여 임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B 회사의 행위는 이미 갑회사가 송장에서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한다.

가격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2002년 11월 8일 중국 A회사와 한국의 B회사가 FOB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재킷 수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지불 방식은 신용장으로 한다. B 회사는 한국 B 회사가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한국 부산까지 해상운송 할 것을 요구하였다. C 회사는 A 회사를 송하인으로 하는 원본 선하증권을 서명 발급하였다. 송하인은 A 회사이고 통지 측은 D 회사이며 인수자는 모 은행이었다. 한국 B 회사에서 시중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A 회사는 여전히 상술한 원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한데 따르면 해당 화물은 목적항에 도착한 후 이미 상술한 선적 증권 통지인 이 은행 담보의 형식으로 원본 선적 증권 없이 C 회사에서 인수해간 상태였다. C 회사는 원본 선적 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화물을 넘겼다. 2003년 10월 8일, A 회사는 중국 해상중재에 상소하여 상응한 경제손실 및 2002년 11월 이후의 이자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C회사는 A회사의 경제손실 및 이자를 모두 배상하였다. 73)

수출 기업은 FOB 조건하에 선적 증권 없이 화물을 인수당할 위험을 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되도록 CIF나 CFR 조건하에 체결하며 FOB를 피한다. 매입자가 운수회사를 섭외하는 것을 피하고 당사에서 선적을 안배한다. 매입자가 FOB 조건하의 거래를 견지할 경우 비교적 유명한 운수회사를 인정할 수 있다. 비 선박 운영자나 매입자가 지정한 외국 에이전시를 피한다. 매입자가 여전히 비 선박 운영자나 외국 에이전시를 통하여 화물을 운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지정된 경외 에이전시나 비 선박 운영자의 신용도 등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FOB 조

73)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华中科技大学, 2008, pp. 60-63.

건하에서 판매자는 선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 납부 의무를 다 하고 매입자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적 증빙서류를 받고 화물 인수 자격을 가진다.

경외 화물 선하 증권은 반드시 국가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시에서 발급해야 한다. 화물 주인은 에이전시를 향해 선하 증권 없이는 화물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표 3-1> 사례분석 요약

구분	사례	판결	시사점
<p>사례1 품질조건사례 『미국xx회사 v 중국xx회사』 「2002」 중국貿仲委沪字0102」</p>	<p>2000년 1월 20일 미국 A회사와 중국 B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B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A회사로부터 한국산 핸드폰 부품 구입, A회사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목적지 도착 후 12개월이다. A회사는 제품 입고 전 상세한 검사, 확인을 걸쳐 사중의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B회사가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제품 품질에 이의가 있으므로 제품 수령 후 13개월째인 2001년 4월 2일 자체로 해당 제품을 중국 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검사기관에 발급한 검사증서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제조불량에 따른 5종목의 합이 운송 전에 이미 존재하고</p>	<p>중재 재판관 소심리 소거처가 정한 기간 내 품질을 검사하지 않음으로 B회사의 구상권을 기각하고 배상을 인정했다.</p>	<p>계약에서 약속한 제품 품질기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윤적, 실질적으로 모두 제품 품질문제의 이의 제기할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 사건 매수자인 B회사는 계약 정해진 시간 내 완성해야 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미 매도자에게 품질 이의를 제기한 권리를 잃었다. 따라서 B회사가 제출한 품질검사 증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없다.</p>
<p>사례2 품질조건사례 『인도네시아xx회사 v 중국xx회사』 「2005」 중국貿仲委沪字0533」</p>	<p>중국의 A회사와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각각 2003년 4월 26일, 2003년 9월 2일과 2003년 9월 20일에 3부의 판매확인서를 체결하였으나 A회사가 인도네시아의 B회사에 티셔츠, 러닝셔츠 등 방직품을 판매하고 확인서 3부의 총금액은 912,141 달러이며 지불방식은 D/A 90일로 정하였다. 상술 확인서가 체결된 후 A회사는 계약에 따라 전면적으로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화물 품질 등 원인으로 20,000 달러의 대금만 지불하였다. B회사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디스카운트 혹은 나머지를 화물을 A회사에 반품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제기하였지만 갑회사의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하였다.</p>	<p>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신청인 대금 및 이자를 지불하고 수입료에 대해서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소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다.</p>	<p>피신청인은 화물을 받은 내에 고추에 검증 불합격 판때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소에 한 화물의 품질이 검증 중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화물의 품질에 문제가 없고 관련 검거구의 검증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화물이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중재판소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반품, 디스카운트 등 주장에 대하여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p>
<p>사례3 품질조건사례 『인도네시아xx회사 v 중국xx회사』 「2006」 중국貿仲委京</p>	<p>중국의 A회사와 인도네시아의 B회사는 2003년 1월 24일에 방직 원단 5000m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원단은 모수일(市) 가공업체의 위탁으로 수입한 것이고 유럽공동체에 수출</p>	<p>중재 재판관을 소의 조정거처 각측은 화물을 10% 인하 가격으로</p>	<p>계약은 검증, 재검사를 규정하였고 최종 검증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증 조항도 비교적 완벽하다. 실제 이행 과정에서 조항 규정 외에 검증 및 손해배</p>

<p>字0114」</p>	<p>의 상을 가공하는데 사용된다. A 회사는 본안의 계약은 품질보증기 때문에 양쪽 30일 이내 품질 납품에 속하고 중국 상품 검사기구에서 검정서는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쌍방이 사전에 약속한 것이고 검정결과가 합법적이며 결과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B회사는 품질이 발송지에서 채택될 때의 품질이 계약 규정에 합치기 때문에 B회사에서는 계약 규정에 부합되는 화물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p>	<p>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류는 해당 생산단위로 산출하기 수하였다.</p>	<p>상 청구의 유효성을 보장하려면 당사자는 또 다음과 같은 몇 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p>
<p>사례4 포장조건사례 『 덴마크xx회사 v 중국xx회사 「2005」 중국貿仲委 沪字0082』</p>	<p>중국의 A 회사는 덴마크의 B 회사와 2003년 1월에 편지와 전보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 회사가 상대 회사에 화학 공업료를 판매하고 가격조건을 CIF 조건으로 정하였다. 구매 측은 5월에 편지를 보내어 판매 측에게 손된 화물을 다시 포장하고 사용된 기타 모든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판매 측이 거절하자 같은 해 10월 구매 측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상해 분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하였다.</p>	<p>조정을 거쳐 12월은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다.</p>	<p>매매계약 중에서 반드시 포장재료, 포장 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거래 쌍방이 포장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거나 장기적인 업무 왕래로 이미 일치한 인식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 포장” “관용 포장” “해운에 적합한 포장” 등 모호한 규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p>
<p>사례5 포장조건사례 『 미국xx회사 v 중국xx회사 「2006」 중국貿仲委 沪字0312』</p>	<p>B 회사는 2007년 1월에 국내 A 회사의 1*20 컨테이너 상품을 주문하였다. 1*20컨테이너 상품에서 컨테이너에 시리얼 넘버를 부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문서에 구체적인 모델 뒤에 시리얼 넘버를 따라 컨테이너 넘버를 부착해 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p>	<p>중재 재판소의 조정 결과 A회사는 B회사를 향해 배상하였다.</p>	<p>A 회사는 공장 측에서 생산 리스트에 별도로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주문 시 영문 옆에 중문으로 해야 한다. 공장 일군들의 영어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실제 정황에 결부하여 중문 표시를 첨가해야 한다. 공장에 주문서를 넣을 때에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따라 주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고객사에서 화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p>
<p>사례6 운송조건사례 『 영국xx회사 v 중국xx회사 「2002」 중국貿仲委 京字0069』</p>	<p>2005년 7월 15일 신청자 및 피신청자는 본 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연합칼슘 51,000톤을 판매 가격은 톤당 FOB S.T.125달러, 대금 지급 방식은 전신환, 선적항은 XX 항, 목적항은 미국 XX이다. 그 후 쌍방은 본 건 계약 이행 관련 분쟁을 벌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건 계약 제7조 중재 조항을 의거하여 신청자가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제기했다. 신청자는 본 건 계약 체결 후 피신청자가 화물 공급기간에 신청자에게 화물 공급을 거절하고 있었다.</p>	<p>대금 지급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피신청자의 화물 부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신청자가 화물 대금 운송을 해운업에 맡겼다고 판정했다.</p>	<p>신청자가 미국 바이어와 체결한CFR판매계약, 피신청인과 체결한 FOB구매계약에서 모두 매도자가 선적비용, 운임 및 선적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했다. 거부 행위로 인해 신청자는 미국과의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신화물을 구입하고 선적을 다시 용선할 수밖에 없었다.</p>
<p>사례7 운송조건사례 『</p>	<p>신청자 중국 B사와 피신청인 영국 A사. 2000년 7월~9월 쌍방은</p>	<p>신청자에게 계약 3부</p>	<p>적용 법률은 영국법이 아닌 <국제물품 매매계약에</p>

<p>영국xx회사 v 중국xx회사 「2001」 중국貿仲委京0075」</p>	<p>피신청자인 신청인에게 CIF가격으로 총468,800달러의 화물을 판매, 최일납품기한은 10월, 11월, 12월, 12월31일 등 내용을 기재한 매도계약 3부를 체결했다. 피신청인은 국내 화물시장이 급변하여 국내 화물시장이 1-2배 증가했다.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계약가격대로 납품할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의 환율과 계약 체결 시 상황에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이윤 합계 550,880 달러 및 계약 3부 중 2부의 신용장 동지 비용 683,31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다. 신청인은 10%, 피신청인은 90%를 부담했다.</p>	<p>관한 유엔협약> 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가격에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셋째, 계약 체결 시 쌍방은 국제시장 가격 변동 리스크를 미리 동예견해야 한다. 넷째, 중국 법률에는 '계약 불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계약불이행) 'frustration of contract'은 영미법계의 전문용어로서 계약 체결 후 쌍방이 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상실되어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무로부터 면책된다. 이 사건 건의 상품 가격변동은 중재법률에서 규정한 '명확한 불공평'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피신청인의 항변이 법적 기반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p>
<p>사례8 보험조건사례 『네덜란드xx회사 v 중국xx회사 「2003」 중국貿仲委沪字0187』</p>	<p>2001년 9월 20일, 중국 A 회사와 네덜란드 C 회사는 500톤의 코코아콩을 구입할 때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FOB, 신용장 지불 조건 하에 선적 시간은 11월이었다. 9월 28일 A 회사는 D 회사와 가공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에서 D 회사에 500톤의 코코아콩을 위탁하고 D 회사에서는 가공 완성품을 A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11월 19일 중국 인민보험 회사 E 분사는 해당 화물 운수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서류에 기재된 피보험 인원 A 회사다.</p>	<p>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p>	<p>피보험인 A 회사는 이 미 선하증권 소유자 혹은 화물 인수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피보험인은 이미 계약 운송업자와 화물 해상운수 계약관계를 아니다. 때에 선하증권을 근거로 계약 운송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회사 대리인인 원고는 보험인의 채권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보험인 이 법적으로 상실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즉 피보험인을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p>
<p>사례9 중재조건사례 『미국xx회사 v 천진xx회사 「2004」 중국貿仲委天津0033』</p>	<p>2002년 천진 A사가 국내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미국 B사의 대리인 홍콩 주민 劉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A가 B로부터 활착물 85%의 중관(사료)을 구입, 지급 식은 신용장이라고 약속했다. 상품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천진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관의 활착물은 계약에서 정한 85%보다 훨씬 낮은 10% 판밖에 안 돼 불합격 상품으로 제기되었지만 B는 그것을 회피했다.</p>	<p>중재판소는 중재법정에 의거하여 B의 신청기결을 기각하였다.</p>	<p>중국 민법 통칙 제66조의 "본인은 타인이 본인 명의로 실시한 민사 행위를 알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유씨는 B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유권 대리행위이었다. 그리하여 본 건 계약은 A, B 사이의 유효계약이며 그 모든 조항(중재조항 포함)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됐다. 그 외에 劉 씨 계약 서명 시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기재한 체결지의 법적 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본 건 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중재재판소가 판정했다.</p>
<p>사례10</p>	<p>2003년 2월 16일 중국 A 회사</p>	<p>A 회사 건</p>	<p>적시적인 합당한 중재</p>

<p>중재조건사례 『독일xx회사 v 중국xx회사』 「2003」 중국質仲委 (調解)0021』</p>	<p>독일 B 회사의 강관을 구매할 때의 관할 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 합의 체결한 계약과 독일 B 회사의 2003년 4월 20일 전에 해당 화물을 배에 적재해야 한다. 4월 24일 독일 B 회사는 A 회사에 4월 20일 배에 적재해 출항했다고 통지했다. A 회사가 운수회사의 사이트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B 회사는 실제로 4월 20일이 아닌 4월 23일에 화물을 배에 적재했던 것이다. A 회사는 곧바로 운수회사에 연락해 B 회사에서 확실한 4월 23일에 화물을 배에 적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p>	<p>의에 따라 중재판소 회차 5월 당 회차 27일 쌍방 화해 협의를 기까지 걸리지 않았다.</p>	<p>신청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해적이고 권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 하려면 해당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면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p>
<p>사례11 가격조건사례 『홍콩xx회사-일 본xx회사 v 광수xx회사』 「2006」 중국質仲委 粵字 (華南) 0043』</p>	<p>2006년 6월 20일 중국 A 회사와 대륙의 B 회사가 (廣州) 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 회사는 A회사로부터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과 수리비를 구입하였고 가격 문제로 하여 일치된 견해를 얻어냈다. A 회사는 6월 15일에 B회사에 전화를 하여 시장에 일본산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고 가격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 혹은 제3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B회사는 6월 20일에 A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B회사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의 계약 변경 협상하지 않았다.</p>	<p>중재판소 회차 5월 당 회차 27일 쌍방 화해 협의를 기까지 걸리지 않았다.</p>	<p>B 회사는 A 회사의 화물 운송 조건을 변경 (품질, 가격 문제) 고려하지 않았고 견수 후에도 여전히 계약에서 약속한 가격대로 출품할 의사가 있었으며 출품 화물의 가격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p>
<p>사례12 가격조건사례 『한국xx회사 v 중국xx회사』 「2003」 중국質仲委 京字0193』</p>	<p>2002년 11월 8일 중국 A회사와 한국의 B회사가 FOB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킷 수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지불 방식은 신용장으로 한다. B 회사는 한국 B 회사가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한국 부산까지 해상 운반할 것을 요구하였다. C 회사는 A 회사를 송하인으로 하는 원본 선하증권을 서명 발급하였다. 한국 B 회사에서 시중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A 회사는 여전히 상술한 원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한데 따르면 해당 화물은 목적항에 도착한 후 이미 은행의 선적 증권 통지인 이 은행 담보의 형식으로 원본 선적 증권이 없이 C 회사에서 인수해간 상태였다. C 회사는 원본 선적 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화물을 넘겼다.</p>	<p>C회사는 A회사의 경제 자 손실 및 배 상하였다.</p>	<p>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되도록 CIF나 CFR 조건하에 체결하며 FOB 를 피한다. 매입자가 운송 회사를 섭외하는 것을 피하고 당사에서 선적을 안배한다. 매입자가 FOB 조건하의 거래를 견지할 경우 비교적 유명한 운수회사를 인정할 수 있다. 비 선박 운영자나 매입자가 지정한 외국 에이전시를 피한다. 매입자가 여전히 비 선박 운영자나 외국 에이전시를 통하여 화물을 운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지정된 경우 에이전시나 비 선박 운영자의 신용도 등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FOB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선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 납부의무를 다하고 매입자는 돈을 지급 불하는 방식으로 선적 증빙서류를 받고 화물 인수를 자격을 가진다.</p>

제2절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의 문제점과 시사점

1. 품질조건과 관련한 사례

제1절에서 분석한 품질조건을 보면 품질조건에 관한 첫 번째 사례는 검증 기한 문제와 관련된다. <유엔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제38조 제1항에서는 “바이어는 반드시 실제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화물을 받은 후 쌍방이 약속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였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B회사는 화물의 입고 전 상세하게 검사하였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2001년 3월 25일 사용과정 중 일부 제품의 품질문제를 발견하였지만 제품을 재검사하지 않았다. <유엔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제39조 제1항에서는 “화물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상의 규정에 따라 B회사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지 13개월 후에 다시 검사기관을 거쳐 진행한 제품 검사와 제출한 증서의 효력은 B회사가 손실을 되찾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시사점으로 2월 매수자가 납품을 받은 후 계약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해 중국 제품검사기관의 증서를 받은 것은 계약 규정에 부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에서 제품 품질에 대한 보장을 바탕으로 한 제품 품질에 대한 매도자의 보장 기간은 목적지 도착 후 12개월, 그러나 그 간 매수자인 B회사가 제품 품질에 이의를 제기한 적 없었다. 계약 규정의 기한 내 매도자에게 이의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품질 구상권을 상실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⁷⁴⁾ 제39조 제1항에 따라

74) 1978년에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협약안을 작성, 1980년 4월 11일에 외교회의(비엔나)에서 채택, 198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국제적 동산매매계약협약이다. ‘비엔나(국제)매매협약’ ‘비엔나통일매매협약’이라고도 한다.

매수자는 제품이 계약에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일정한 시간 내에 매도자를 알려야 하고 요건 미달의 성질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과 계약 불일치를 클레임으로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서 약속한 제품품질보장기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론적, 실제적으로 모두 제품 품질 문제에 이의 제기할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 사건 매수자인 B회사는 계약 규정 시간 내 완성해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이미 매도자에게 품질 이의를 제기한 권리를 잃었다. 따라서 B 회사가 제출한 품질검사 증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없다.

품질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 계약서에서는 검사, 재검사, 다시 검사를 규정하였고 최종 검사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검사조항도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이런 유형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주의해야 한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본안의 논쟁 초점은 B회사에서 제기한 화물 품질 이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A회사에서 B회사에 제공한 상품은 모두 법정검증상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품질 논쟁문제는 계약 중에서의 검증조항 및 검증표준에 의거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화물 품질에 대한 이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배상 의거 즉 상품의 검증문제와 연관된다. 본안의 판매확인서 3부 중에서 쌍방은 검증조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런 상황에서 중재재판소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검증조항에 약속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공약>과 국제무역관례 중에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바르샤바 옥스 퍼드규칙>제19조에 의하면 “만약 판매측이 화물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와 이러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구매측이 이미 해당 화물을 받아드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검증은 화물이 매매계약에서 규정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인지는 구매 측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검증을 완성한 후 3일 내에 구매 측은 반드시 매매계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실을 판매 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구매 측은 화물을 거절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본안에서 피신청인은 화물을 받아들이고 검증 후 3일 내에 판매 측에 검증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에 상술한 화물의 품질이 검증 증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줄곧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화물의 품질에 문제가 없고 관련 검증 기구의 검증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화물이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중재재판소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반품, 디스카운트 등 주장에 대하여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품질조건에 관한 세 번째 사례시사점은 검증권과 검증 증서의 법적 효력 문제와 연관된다. 국제 화물 매매 중에서 화물을 납부한 후의 검증권은 화물 인계인수 과정에서의 매매 쌍방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러므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매 쌍방은 흔히 계약에 판매 측이 검증권을 행사하는지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최종 검증권 귀속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므로 계약을 통하여 관련 검증의 표준, 검증의 지점, 검증의 기구와 최종 검증 귀속을 명확히 약속하는 것은 각 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직접적이고 밀접히 관계된다.

2. 포장조건과 관련한 사례

포장조건과 관한 첫 번째 사례는 포장조건의 이행 과정 중 중국회사에서 화물을 발송한 후 계약운송업자로부터 서명한 무고장 선하증권을 받았고 운송한 화물의 외관 상태가 양호함을 표시한다. 계약운송업자는 화물 훼손 혹은 포장불량과 같은 비고를 붙이지 않았다.

<헤이그 규칙>(Hague Rules)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운송업자는 송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운송업자가 배에 짐을 실을 때 검사한다. 만약 검사결과 화물의 표면상태가 양호하면 선하증권에 ‘표면상태 양호’라고 적어야 하고 계약운송업자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책임이 있고 상응한 규제를 받는다. 짐 내린 후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운송업자는 배상을 해야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전 이미 포장불량이 존재하였다고 구실을 찾아서는 안 된다.”

판매 측은 계약 운송업자가 서명 발급한 무결함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획득하였다. 이는 화물의 표면 상황이 양호하고 계약 운송업자가 화물 파손 혹은 포장 불량 등 평어를 적어놓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 더군다나 판매 측이 화물을 발송하기 전에 구매 측의 책임자가 당사 창고에서 포장 상황을 보고 만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구매측은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 Pallet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계약운송업자 혹은 관련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사례부분에서 상대방 배상을 요구할 때 정확한 대책을 사용하여 중재에서의 피동적인 입장을 비할 수도 있다. 본 사례 중 중국당사자가 쉽게 부대조건이 달린 배상승낙을 하였고 비록 국제무역 관례에 따라 상대방이 승낙을 거절하여 그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이런 유형의 배상승낙은 중재재판부가 주관상 당사자가 이미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필연 판결에 소극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포장조건과 관련한 두 번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는 포장표준에 관한 문제다. 포장명세서/중량명세서는 상업송장의 일종의 보충이다. 상품의 부동한 포장규격, 부동한 패턴, 부동한 중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증빙서류이다. 이는 해관에서 물품을 점검하고 매수인의 물품을 인수하는 주요한 의거이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A 회사는 공장 측에서 생산 리스트에 별도로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주문 시 영문 옆에 중문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장 일군들의 영어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공장의 실제 정황에 결부하여 중문 표시를 첨가해야 한다. 공장에 주문서를 넣을 때에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따라 주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사에서 화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3. 운송조건과 관련한 사례

운송조건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에서 지급에 관한 사건이며 계약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한 상황에서 지급시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쟁을

일으켰다. 이처럼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들은 계약을 제정하기 전에 국가의 해관규정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수출을 할 때 FOB를 사용한 사례에서 매수인 계약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배를 보내지 않아서 화물을 받지 못하면 매도인은 납품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고 있다. 중국 회사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는데도 매수인 측에서 제시한 시간에 선박을 보내지 않고 화물을 받지 않으면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사건은 지급에 관한 사건이며 계약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한 상황에서 쌍방은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쟁을 일으켰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This contract is applied to the Contract Law of P. R. China”라고 약속한 것이므로 중국 ‘계약법’ 적용할 수 있어 중국 중재규칙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본 건에서는 신청자가 미국 바이어와 체결한 CFR판 매매계약, 피신청인과 체결한 FOB구매계약에서 모두 매도자가 선복용선 비용, 운임 및 선적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화물인도 거부행위로 인해 신청자는 미국과의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신화물을 구입하고 선복을 다시 용선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8월 피신청인이 인도 거부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공급자 연락, 9월 5일 대신 화물 구입 계약 체결 등 행위가 부당한 점은 없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99조, 즉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신청자는 대신 화물 구입대금 및 원래 계약과의 운임 차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한 것도 피신청인이 예견 가능하거나 예견해야 할 계약 위반 결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약으로 인한 신청자의 실손을 보상해야 한다.

둘째사건의 시사점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제79조 제1항에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은 제어 불가의 상황,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상황,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예견 및 제어 불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제무역에서의 불가항력이다.

국제무역실무에서 계약 체결 후 상품 가격 변동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건 계약에는 이에 대한 규정도, 가격 상승 폭이 얼마나 커서 불가항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없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몇 개월 동안 상품 가격은 1배 상승했지만 피신청인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시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4. 보험조건과 관련한 사례

보험사례에서 화물을 목적항만에서 교부하기 전 선하증권은 이미 A회사에서 D회사로 넘겨주었고 D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계약운송업자에게 수취, 선하증권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을 주장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미 양도하였고 A회사와 D회사 사이의 의뢰가공과 대신수취의 관계는 계약운송업자와 보험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A회사는 더 이상 선하증권의 합법적 소지인이 아니고 선하증권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을 근거로 피고가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 외에 A회사는 선하증권 배서 행위 때문에 화물에 대한 보험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당사자가 A회사를 향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안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위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거래과정 중 이런 유형의 사건을 피하려면 선하증권 양도 후의 두 가지 효력대내효력(선하증권 양도자 간의 효력)과 대외효력(운송계약 효력, 즉 선하증권 소지인과 계약운송업자 간의 효력)을 알아야 한다.

본 사건은 보험인이 대신하여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즉 선하증권이 배서로 양도된 후 피보험인이 법에 근거하여 보험목적물을 손상한 제3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피보험인 A회사는 이미 선하증권 소유자 혹은 화물 인수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피보험인은 이미 계약 운송업자와 화물 해상운수 계약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선하증권을 근거로 계약 운송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회사 대리인인 원고는 보험이의 채권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보험인 이 법적으로 상실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즉 피보험임을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중재조건과 관련한 사례

중재조건과 관련한 첫 번째 사례분석을 통해 쌍방당사자는 이 사건에 대한 주장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판결을 비교할 때 우리는 상술한 거래에서 A회사가 실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회사는 국내 고객과 대리 수입 협정을 체결하고 집행할 때 중구대외경제무역부, 해관총서, 국가 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수입대리 업무를 규범화시키는데 관한 여러 규정>의 요구에 따라 위험 예방에 관한 규범화 조작을 진행하지 않았다.

우선, A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 대신 모든 물건 값을 내지 말아야 하고 의뢰인은 20,00위안의 계약금만 냈다. 이런 상황은 위험, 의무를 감당하고 계약 권리를 누리는 방면에서 뚜렷한 불평등의 관계이다.

사실상 본 거래는 단순히 대외무역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고객이 스스로 외상과 교섭한 결과이고 A회사는 거래과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였다. 이는 B회사는 중재과정 중 국내 고객이 스스로 외상과 교섭하고, 건조한 컨테이너 수송 방식을 선택하며 선하증권에서 상품 명칭을 “사료”로 적을 것을 외상에게 요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재판에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중재재판 결과 이 사례의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A회사는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해동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劉씨가 매도인대리인이라는 신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약을 했다. ②화물이 항구에 도착해서 품질문제를 발견한 후에도 A는 여전히 劉씨를 거쳐 B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B도 劉씨를 거쳐 배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때문에 B는 중재과정에서 A가 계약에 적힌 데로 자신에게 서면 배상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았다.

본안에서 B 회사는 구매 측으로서 화물을 수취한 후 반드시 약속에 따

라 대금을 지불하여 이로써 자신의 법률 의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B 회사는 화물을 수취한 후 일부분의 대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중재가 제기될 때까지 B 회사는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의 행위는 이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약행위에 속한다.

사례 중에서 알 수 있듯이 B 회사는 A 회사의 화물 원산지 변경 (품질 조항) 조건을 동의할 때 가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검수 후에도 여전히 계약에서 약속한 가격과 송장 가격에 따라 실제로 일부분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줄곧 화물의 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적시적인 합당한 중재를 신청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하려면 해당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때문에 중국 회사에서는 이면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6. 가격조건과 관련한 사례

가격조건에 관한 첫 번째 사례에서 B회사가 본안을 통해 얻어야 할 교환은 A회사가 화물산지(품질조항)를 변경하는 것을 동의할 때 마땅히 부동한 산지의 상품의 가격문제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급히 화물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점을 소홀히 하였고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와 스스로 검수한 후 여전히 계약서에서 약속한 가격과 영수증 가격 대로 일부 물건 값을 요구할 때 화물이 일체가 아닌 이유로 지불을 거절 하였다.

사례 중에서 알 수 있듯이 B 회사는 A 회사의 화물 원산지 변경 (품질 조항) 조건을 동의할 때 가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검수 후에도 여전히 계약에서 약속한 가격과 송장 가격에 따라 실제로 일부분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줄곧 화물의 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발생이 초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계약서를 이행할 때 상대방이 조항을 수정할 때 쌍방모두 수정한 내용에 따라 전체 계약의 내용을 적당히 조절하여 공평 거래를 진

행하고 이런 분쟁을 면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되도록 CIF나 CFR 조건하에 체결하며 FOB를 피한다. 매입자가 운수회사를 섭외하는 것을 피하고 당사에서 선적을 안배한다. 매입자가 FOB 조건하의 거래를 견지할 경우 비교적 유명한 운수회사를 인정할 수 있다. 비 선박 운영자나 매입자가 지정한 외국 에이전시를 피한다. 매입자가 여전히 비 선박 운영자나 외국 에이전시를 통하여 화물을 운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지정된 경외 에이전시나 비 선박 운영자의 신용도 등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FOB 조건하에서 판매자는 선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 납부 의무를 다하고 매입자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적 증빙서류를 받고 화물 인수 자격을 가진다.



제 IV 장 중국의 무역분쟁해결방안

제1절 중국의 무역계약조건별 분쟁해결방안

1. 품질조건

품질에 관한 첫 번째 분쟁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안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검사는 반드시 쌍방이 계약서에서 약속한 상품검사 기구에서 진행해야 하고 상품검사 증서는 본 기구에서 발급해야 한다. 둘째, 바이어는 반드시 쌍방이 계약서에서 약속한 상품검사 기구에서 발급한 증서로 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만약 화물이 항만에 도착한 후 화물의 품질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바이어는 즉시 규정한 기한 내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유효한 상품검사 증서가 없을 경우 이런 배상요구는 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갑이 규정한 청구 기한 내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기에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품질과 관련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품질조건관한 분쟁은 대부분 품질검사 및 품질검사의 법률적 효력문제에 집중된다. 국제 화물 매매과정에서 화물 납부후의 점검권리는 직접적으로 화물 인수인계과정에서의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관계된다. 책임을 명확하게 위하여 매매 쌍방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바이어의 점검권리 행사여부, 점검권리의 최종귀속 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짓는다. 때문에 계약을 통하여 품질점검의 기준, 점검지점, 점검기구 및 검사 최종귀속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매 쌍방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품질검증 기준을 선택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 국가 법률 혹은 행정법규가 명시한 강제성을 띤 품질점검기준 혹은 기타 점검기준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 상품은 모두 법률법규에 의하여 표준점검을 실행해야 한다.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 명시되지 않는 점검기준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품질조건 중 품질 보장기한과 품질검사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계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정한 조항에 따라 검사 의무를 완성해야만 최대한 이런 유형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2. 포장조건

포장조건 관한 첫 번째 사례에서는 포장은 비닐이고 겉포장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주머니다. 이런 유형의 조항이 만약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거래과정에서 포장조건에 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 중에서 운송한 물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과립형 물체이고 팔레트 수송이 적합하지 않다. 적당한 포장수단을 파악하는 것은 계약하기 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는 기본상식이다. 상술한 몇 가지를 주의하면 최대한 포장조항의 이행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거래 쌍방이 포장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상하였거나 장기적인 업무 왕래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습 포장", "관용 포장", "해운 적합 포장" 등 모호한 규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중에서 포장 조항을 규정할 때 포장 재료와 포장 방식을 규정하여야 하는 외에 상품의 특성과 운수 방식의 특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한 포장조항의 요구에 따라 포장을 진행해야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다. 문화배경, 종교, 생화수준의 차이로 인해 부동한 소비자는 부동한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포장지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양, 색상, 브랜드 로고 등 면에서 구매자의 소비습관에 부합되게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국의 해당 법률규정에 맞는 포장자료를 사용해야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포장조건 관한 첫 번째 사례에서는 공장 일군들의 영어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공장의 실제 정황에 결부하여 중문 표시를 첨가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정에 주문서를 넣을 때에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따라 주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사에서 화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

은 포장문제를 줄일 수 있다.

3. 운송조건

운송사례에서 화물적재운송 통지에 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무역의 일반적인 방법에 근거하면 FOB조건이 성사될 때 계약을 반드시 매도인이 화물의 인도하기 전에(30일 혹은 40일)매수인이 선박을 보내 화물을 받기 쉽게 화물의 준비 상황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통지를 받은 후 선박 입차 수속을 시작해야 하며 선박 명, 선박 국적, 선박 톤수, 배수량, 선박이 도착하는 예정시간을 매도인에게 알려주어 미리 화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받기 위하여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한 다음 매수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보통 24시간이내). 둘째, FOB조건으로 계약의 체결되었을 때 매수인 매도인에게 선박명, 선박 장소, 납품 시간에 대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지정 선박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화물을 받지 않았을 경우 통지한 시간보다 일찍 납품이 끝났다면 예정된 시간 혹은 납품 시간이 만기된 그 날부터 시작하여 매수인은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화물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동의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보낸 선박이 제시시간에 도착하였지만 매수인이 물건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로서 생긴 창고 비용과 관리비용은 모두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

4. 보험조건

당사자가 거래과정 중 이런 유형의 사건을 피하려면 선하증권 양도 후의 두 가지 효력대내효력(선하증권 양도자 간의 효력)과 대외효력(운송계약 효력, 즉 선하증권 소지인과 계약운송업자 간의 효력)을 알아야 한다.

(1) 선하증권 배서 교부를 제시하는 대내효력

중국 해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계약운송업자와 송하인 사이에서 달성한 해상 화물운송 계약의 증명이다. 선하증권의 이러한 작용은 그가 채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운송 쌍방이 화물운송 관계에서 권리와 의

무를 확정하는 근거이다. 국제 해상운송관계에 의하면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선하증권에 포함되거나 증명하는 계약의 양도”이다. 이 사례에서 A회사는 선하증권 뒷면에 서명날인하고 D회사에게 넘겨 화물을 수취하게 하였다. 이는 선하증권의 양도형식에 부합되고 이미 양도의 초보근거로 된다. A회사는 여전히 D회사와의 의뢰가공 등 법률관계 그리고 화물 소유권에 관한 약속에 따라 D회사에게 선하증권 외의 기타 상응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선하증권 배서 교부의 대외효력

사례를 통해 선하증권은 합법적인 배서 교부를 통해 즉시 계약운송업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생기고 계약운송업자는 단지 선하증권 계약의 합법적 양수인을 상대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화물배상책임 등 더 이상 선하증권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선하증권은 합법적인 양도를 통해 화물수취에 사용된 후 피보험자 A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 혹은 수령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계약운송업자와는 더 이상 해상운송계약 관계가 아니다. 선하증권으로 계약운송업자에게 화물손실 책임을 요구하지 못한다. 보험 대리인인 신청자는 보험인의 채권을 대리하거나 양수하기 때문에 피보험인이 법적으로 상실한 권리를 얻지 못하고 피보험인을 넘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반대로 제3자가 피보험인에 대한 항변권(권리의 결함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본 사례가 선하증권 권익과 보험권익의 분리 상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해결방법이 있다.

5. 중재조건

중재조건 관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리인의 실수로 중재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고 거래 쌍방이 대리인을 거쳐 거래를 완성할 경우 신용도가 높은 대리인을 찾아야 하며 계약 체결할 때 거래 쌍방과 대리인이 거래과정 중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사례에서 분쟁을 발생할 때 중국회사는 상황 파악을 잘 하고 거래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합쳐서 고려하며, 자기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

였다. 다음은 이 중국회사가 이 사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에서 중국회사 대한 불리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신용장의 법적 효용이 매매계약과 병행하여 서로 성질이 다르다.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인도 행위상 부정적인 행위를 신용장에 대출 권리를 대한 영향은 줄 수 없다. 둘째, 신용장조항에서 대출은행은 서류를 신용장에 일관성대한 심사한다. 때문에 피신청인 외관상 신용장조항 부합한 지급행위를 부정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 중국은행은 신청인에게 결제요구가 합리적인 행위다.

사례에서 중국회사 대한 유리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매도인은 납품 연기한 행위와 ANTI-DATED B/L한 행위를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 둘째, 이 분쟁상황을 대한 중국회사가 재산보호 신청한 이유를 충분하다. 셋째, 중국은행 신용장 지불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를 법적 절차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넷째, 중재절차가 피신청인에게 거대한 압력을 주는 것이다. 중국회사는 위에 설명한 조항을 파악하고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재산보호 권리를 수단으로 자기 합법적인 이익을 지킨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후 당사자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계약 항목에서의 화물 원산지 조항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항목에서의 화물의 가격 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고 화물의 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원래의 계약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후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률이 확정된 기본 규정이다.

6. 가격조건

중국은 대외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송금환, 위탁 징수, 신용장 지불 등 여러 가지 지불방식을 사용한다. 정가방법에는 불변가격과 가변가격 두 가지가 있다. 국제무역은 일정한 화폐를 단위로 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 때는 비교적 안정되거나 환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놓인 화폐를 단위로 해야 한다. 수출업무는 일반적으로 일람출금 신용장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기한부 신용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 가격을 정할 때에는 이자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부 기업이 모종의 특정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정된 지역의 특점에 입각하여 일부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고객에 한하여 우선 돈을 받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를 이행할 때 상대방이 조항을 수정할 때 쌍방 모두 수정한 내용에 따라 전체 계약의 내용을 적당히 조절하여 공평 거래를 진행하고 이런 분쟁을 면해야 한다.

가격조건에 관한 두 번째 사례에서 경위 화물 선하 증권은 반드시 국가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시에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FOB조건하에서 판매자는 서적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 납품 의무를 다하고 매입자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적 증빙서류를 받고 화물 인수 자격을 가진다. 일부 신용도가 불명확한 기업에 대해서는 설사 전에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있다 하더라도 FOB 조건하에서 수출할 때에는 결제를 마친 후에 여러 번에 걸쳐 수출해야 한다. 되도록 결제 전의 여러 번에 나누어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수출상의 해외무역팀 사원은 반드시 신용장 무역과 해상운수 사무 조작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한다. 경위 화물 선하 증권은 반드시 국가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시에서 발급해야 한다. 화물 주인은 에이전시를 향해 선하 증권 없이는 화물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중국의 무역중재제도의 문제점

현재, 중국의 중재제도는 주로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을 기본 프레임으로 한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중국의 중재사업은 큰 발전을 안겨왔고 중국국제 무역 중재위원회의 안건 접수수량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안건 당사자는 중국 이외의 45개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도 포함되는바 이는 중국 중재 입법에 대한 일종의 도전과 독촉이다.⁷⁵⁾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은 객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재제도를 진일보로 개선시키고 국내 중재제도와 국제사회 통행규칙의 접목을 실

75) 宋朝武, 『仲裁法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6.

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중재기구의 민간화를 진일보로 실현하여야 한다. “중재기구의 민간성과 중재의 발전역사는 밀접히 관련되는바 이는 중재제도가 심판제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⁷⁶⁾ 중국의 『중재법』 제8조에서는 “중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바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제14조에서는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고 행정기관과 예속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중재기구는 민간성 부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중재기구의 건강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재협의 형식의 변동" 중재협의를 중재기구에서 중재권을 획득하는 전제이자 당사자 의사자치의 결과이다. 중재협의를 대하여 중국의 『중재법』 제16조에서는 "중재협의를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방식으로 분쟁 발생 전과 분쟁 발생 후 달성한 중재를 요청한 협의가 포함된다. 중재협의를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① 중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② 중재사항 ③ 중재위원회 선정 등이 있다."⁷⁷⁾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

셋째, 임시중재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시중재는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의거하여 임시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인바 일정한 중재규칙과 절차에 따라 특정 논쟁에 대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중재재판소에서 논쟁 안건을 처리한 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임시중재는 기구중재와 비교하여 말한 것인바 역사적으로 임시중재는 중재의 유일한 방식이었다.⁷⁸⁾ 현재, 중국의 『중재법』에는 임시중재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1958년 유엔 <외국중재재결공약에 대한 인정 및 집행>에 참가하였고 해당 공약은 기타 성원 경내에서 내린 임시중재재결을 체결하였거나 참가하였을 경우 인정하고 집행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상의 결실은 권익 면에서의 중국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시중재는 융통성, 편리성을

76) 王生长, 『仲裁与调解向结合的理论实务』, 法律出版社, 2001.

77) 중국 중재법 제 16 조

78) 张斌生, 『仲裁法新论』, 厦门大学出版社, 2007.

지니고 있어 당사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시중재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중재에 대한 감독을 약화시키고 협조를 강화시켜야 한다. “사법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중재 입법 통례이다.”⁷⁹⁾ 중재의 사법감독이란 일반적으로 중재활동 및 중재재결이 법률 혹은 국제공약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진행한 사법심사를 말하는바 이것을 통하여 중재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간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에서 중재에 대하여 사법감독을 진행하는 사유, 즉 중재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와 이유에는 공공질서, 논쟁 중재 가능성에 대한 심사, 중재판할권, 중재절차, 중재원 행위에 대한 심사, 중재재결, 실체문제에 대한 심사 등이 포함된다.

제 3 절 중국의 무역중재제도의 개선방안

1. 중재기구의 민간화를 진일보로 실현하여야 한다.

(1) 중재기구의 설립이 제한을 받는다. 중국의 『중재법』 제10조에서는 “중재위원회는 앞서 규정한 시 인민정부에서 관련 부서와 상회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편성한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 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한다.”⁸⁰⁾ 라고 규정하였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중재제도 발전의 시작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중재기구를 편성하는 것은 중재사업의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의를 지녔지만 현재 중국의 중재사업은 이미 점차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기구 건립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취소시켜야 한다.

(2) 여러 지역에서 중재기구 내부의 행정기관 영도가 중재위원회 기구 담당자를 겸임하는 현상이 비교적 돌출한바 이런 인사 면에서의 혼합은 중재기구 로 하여금 행정기관과의 실질성적인 연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방식은 장관의지, 행정간섭(行政干預)과

80) 중국 중재법 제 10 조

지방보호주의의 번식에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심지어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중재기구의 중재위원회 성원들 중에서 당정기관 영도가 차지하는 비례가 지나치게 높은바 이 또한 중재위원회의 결핵수준과 공공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으로 중재원은 반드시 정부기관의 영도가 아닌 법률 영역의 전문가여야 하고 중재원의 비전문화는 중재사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3) 상당한 수량의 중재기구는 현재 아직도 행정사업단위 관리체제를 실행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돈을 직접 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에서 또 직접 재정부서에 전달하여 재정부서에서 수지계획을 세운 후 중재기구에서 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다. 중재기구 재정은 독립하지 않은바 중재원의 수입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초래하였고 이는 우수한 전문인재를 중재원 대오에 가입 시키는 것에 불리하다. 그러나 중재원의 전문수준은 또 안건 처리와 중재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미래의 중재제도 개혁은 반드시 상술한 중재 발전을 방해하는 현실 문제를 고려하고 현존하는 구조를 타파하며 중재의 민간성을 옹호하는 데 유리한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여야 한다.

2. 중재협의 형식의 변동

첫째, 유효한 중재협의를 반드시 중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중재사항, 선정된 중재위원회 등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하는바 만약 관련 요소가 결핍하면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 중에서 중재협약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바 일단 중재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사후 협의를 보충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염원은 흔히 실현될 수 없다.⁸¹⁾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실천은 중재협약이 중재기구를 예정하였는지 여부는 중재협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사권자치를 존중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반드시 외국의 관련 입법과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중재협약에 대하여 최대한 여유롭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광범하게 해석하여

81) 罗斌, “21世纪纠纷解决手段多元化”, 人民日报, 2005.09.10.

야 한다.

둘째, “기타 서면방식”에 대하여 합의적으로 중재협정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당사자가 체결한 논쟁을 중재에 제출하고 계약과 분리된 전문적인 서류이다. 하지만 중재실천 중에서 국제 중재의 발전추세에서 볼 때 “기타 서면 방식”에 대한 이해는 모두 광의적인 것인바 거기에는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정 서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 사이에 중재 제출 염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포함된다. <외국중재재결 공약에 대한 인정 및 집행>제2조 제2항에서 ‘서면형식’이란 단어는 “당사자가 체결한 혹은 서로 주고받은 편지, 전보에 포함된 계약 속의 중재조항 혹은 중재협의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85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국제상사중재시범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제7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바 “중재협의를 서면적인 것이다. 협의가 만약 당사자들이 사인한 서류 중에 기재되었거나 주고받은 편지, 전보 혹은 협의기록을 제공한 기타 통신수단 중에 기재되었거나 청구서와 답변서의 교환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협의가 있다고 하였고 기타 당사자도 부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협의로 간주할 수 있다.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기재한 서류를 참고할 것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은 중재협의를 구성할 수 있고 만약 해당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었고 이러한 참고가 해당 중재조항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의 일부분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것을 중재협의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계약법』에서도 서면형식의 정의에 대하여 “계약서, 우편물과 전보문 등 유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관련 법률을 국제중재규정과 접목시키고 당사자의 중재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미래의 『중재법』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기타 서면방식”의 중재협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3. 임시중재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

임시중재는 특수우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국은 상설기구를 설치한 상황에서도 임시중재를 취소시키지 않은 반면 그것을 신속하게 발전시켰고 당사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국제상사중재 중에 임시중

재는 특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 통행규칙과 접목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중재제도 개혁에서 중국은 반드시 임시중재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중재에 대한 감독을 약화시키고 협조를 강화시켜야 함

중재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외부감독이 아주 중요한바 현대 각국의 중재 입법은 이 문제에서 공동한 추세를 보였다. 즉 중재에 대한 법원의 사법 간섭이 끊임없이 약화되었지만 중재에 대한 협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위에서 무역분쟁사례 살펴 본바와 같이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 제출된다.

첫째, 최초 접촉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국어와 영문 계약서 외에 상대국 언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방의 신용,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개자의 말을 토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셋째, 통역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역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역자가 통역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과는 달리 마음속으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은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되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어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중국 측과의 접촉, 회사 경영 등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중국인으로부터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으나 처음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관계가 좋다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너무 믿고 맡긴 경우에 오히려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외국에서 사업할 경우에 현지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을 끌어 외국인을 지치게 한 다음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초조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고 중재관할 지역을 자국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제 V 장 결론

본 논문은 중국 『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에 의하며, CIETAC 근년에 실제 발생한 중재 사례를 연구하여 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당사자 지치 및 중재합의 독립성 및 법원 감독 등 국제상사중재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 중재 입법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사례 분석 부분에서 중국 국제무역 분쟁에 흔히 보이는 품질, 포장, 운송, 보험, 중재 및 가격 등 6종류의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무역분쟁 해결책 및 예방책의 다른 점을 밝히려고 하며 중국기업간 국제무역을 할 때 직면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품질, 포장, 운송에 관련 무역분쟁에서 첫째, 시장별, 소비자별 수요에 따른 수출상품 품질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수입국 관련 법규 및 요구에 적응하고 품질 검사 기준, 포장 규격 등 차이로 인한 분쟁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계약에서 수량 및 규격 계산에 관한 조항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 셋째, 상품 갱신 및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며 세계 소비 트렌드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품 품질을 제고하고 갱신 속도를 가해야 한다.

중재 조건 관련 무역 분쟁에서 계약 체결 시 중재 조건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재조항은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주 계약(主契約) 조항 중의 하나자 주 계약의 일부이기도 하다. 중재조항의 독립성은 주 계약 조항 중의 하나로 주 계약에 종속되지만 다른 조항과 분리되어 있으며 종속된 주 계약과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중재조항은 주 계약 중 다른 조항의 분리, 해지, 변경 또는 취소로 무효되지도, 주계약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 계약 무효, 해지,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계약의 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기관 판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이 점을 이해해야 분쟁이 일어난 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소는 중재에 중재지가 적용되는 절차법이다. 심지어 매매계약이 적용되는 실체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국가의 법률 해석에 따라 절차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대부분은 심판 직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느 나라에서 중재되면 그 나라의 중재 법규에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무역 파트너 소재 국위 중재 법규는 물론 일반 법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가격 조건 관련 무역 분쟁에 대해 대외무역 종사자가 외환결제 서류를 만들 때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서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신용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화물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각 서류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둘째, 서류 부수는 신용장 규정에 모자람 없이 부합해야 하고 내용은 중목 부족이 없도록 완비되어야 한다. 셋째, 적시성, 서류는 인도기일이나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즉시 제작해야 한다. 넷째, 서류 내용은 신용장 요구와 국제관례대로 작성, 이해하기 쉬운 원칙으로 필요 이상의 내용을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서류의 배치는 보기 좋아야 하고 필적은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특히 금액, 건수, 중량 등 내용이 변경 없이 또렷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엄수하면 지급조건이 일으키는 무역 분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역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범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발생한 무역 분쟁 중 대부분은 중국 대외무역 업자가 계약 규칙에 익숙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무역을 하는 업체가 중국의 중재제도를 더욱 이해함으로써 무역실무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성공을 거두는 데 본고의 취지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 강원진, 『무역계약론』, 법문사, 2008.
- 강효백, 『G2시대 중국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세영·허윤,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 곽노성, 『국제협상론』, 경문사, 2010.
- 류해민, 『무역상무론』, 대명, 2009.
-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0.
- 박수현, "한국·중국간 상사분쟁과 중재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 14 권 제 1 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오원석, 『무역계약론』, 삼영사, 1995.
-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博英社, 2004.
- 오원석·이경화, "중국의'중재와 조정의 결합'제도 와 시사점", 『貿易學會誌』 제 38 권 제 4 호 2013.
- 우광명, "중국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인민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 21 권 제 1 호, 국제상학회, 2006.
- 윤광운·노현수, 『무역실무』, 탐복스, 2012.
- 이승석, "중국지방중재위원회 현황과 CIETAC와의 비교",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 15 권, 제 3호, 한국중재학회, 2005.
- _____,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19 권, 제 2 호, 국제상학회, 2004.
- 이해한, "중국의 중재제도", 법조, 2003.
- 이화,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중재제도와

-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장효상, 『國際經濟法』, 法英社, 1996.
- 진경,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하현수 · 윤충원, "중국 내륙과 홍콩간 중재관정의 상호집행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 33 권 제 5 호, 한국무역학회, 2008.
- _____,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관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 15 권 제 2 호, 한국중재학회, 2005
-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관한연구-섭외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 23 권 제 3 호, 2008

2. 외국문헌

- 『中國人民共和國仲裁法』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 (2012)』
- 江伟, 『仲裁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 兰花, 『涉外法律制度案例』, 山西教育出版社, 2004.
- 潭兵, 『中国仲裁制度的改革与完善』, 人民出版社, 2005.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裁決書選編 (2003-2006)』, 法律出版社, 2009.
- 幸理·刘丹·常何, 『国际贸易实务案例』, 華中科技大學, 2008.
- 宋連斌, 彭丽明, "2013年中国商事仲裁年度观察", 『北京仲裁』, 제83권 제1호, 2013.
- 馬駿, "我國商事仲裁制度改革若干建议", 『行政与法』 第12期 2011.
- 沈四宝, 沈健, "中国商事仲裁的特征与自主创新", 『法学』 第12期 2010.
- 张博华, "我国仲裁协议效力确认制度的问题与完善", 『山西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第3期 2011.
- 邓晓蕾, "论仲裁制度的诉讼化", 『甘肃广播电视大学学报』 第2期, 2011.
- 尹娜, "國際仲裁制度的比較分析-中國國際仲裁制度的國際化發展", 雲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高菲, 『中國特色社會主義仲裁理論研究文集』, 法律出版社, 200

黃亞英, "我國商事仲裁疑難問題及其最新典型案例分析(二)", 『仲裁與法律』, 第120輯, 法律出版社, 2011

_____, "論商事仲裁的十大特點和優勢", 『暨南學報』, 第171期, 2013.

3. 인터넷자료

한국중재학회홈페이지 '<http://www.kaas.re.kr>'.

대한상사중재원홈페이지 '<http://www.kcab.or.kr>'.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http://cn.cietac.org>'.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分会, '<http://www.sccietac.org>'.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上海分会, '<http://cietac-sh.org>'.

国家统计局, 'www.stats.gov.cn'.

